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2018.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8. 10. 22.)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481.3조원, 총지출 470.5조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 등 현안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년도 본예산보다 총지출을 41.7조원(9.7%) 확대 편성하였으며, 이러한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면한 사회적·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국가채무·재정수지·의무지출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과 분석내용을 수록하였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대책 등 주요 정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보조금, 출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안을 각각의 기관별로 살펴보았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차 례

CONTENTS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I. 예산안 개요 / 3

- 1. 현 황 3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4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4

II. 개별 사업 분석 / 5

- 1.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의 효율적 수행 필요 5

[대통령경호처]

I. 예산안 개요 / 9

- 1. 현 황 9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0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0

II. 개별 사업 분석 / 11

- 1. 경호안전교육원 교육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11



[국회]

I. 예산안 개요 / 17

- 1. 현 황 17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8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9

II. 개별 사업 분석 / 20

- 1.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20
- 2. 국회미래연구원 사업 운영의 문제점 23

[국가인권위원회]

I. 예산안 개요 / 29

- 1. 현 황 29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0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31

II. 주요 현안 분석 / 32

- 1. 지역 인권사무소 설립·운영의 체계적 사업관리 필요 32



Ⅲ. 개별 사업 분석 / 36

- 1. 국가인권통계 구축의 조속한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36
- 2.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사업의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 필요 39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I. 예산안 개요 / 47

- 1. 현 황 47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51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52

II. 주요 현안 분석 / 53

- 1. 수형자 교도작업 이행률 제고 노력 필요 등 53
 - 1-1. 교도작업 정역 집행률 제고 및 작업환경 개선 노력 필요 54
 - 1-2.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규모 조정 필요 56



Ⅲ. 개별 사업 분석 / 58

1. 대검찰청 신규 조직의 면밀한 운영계획 수립 필요	58
2.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신규사업의 철저한 추진 필요	61
3. 법령경연 학술대회 외부 심사위원 수당 지급기준 마련 필요 등	65
4.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 점검 필요 등	69
5. 민상사 법학연구 지원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필요	73
6. 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률 개선 노력 필요	77
7.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운영 사업 정비 필요	79
8. 출입국소송·난민소송 관련 적정 예산 편성 필요	83
9. 국유재산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국유재산 무상사용 개선 필요	86
10. 범죄신고자 보상금의 집행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90
11. 형사보상금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92
12. 보호관찰소 임시조직의 예산운영 및 직제체계 정비 필요	94
13. 마약수사 사업의 ODA사업 지정·관리 필요	96
14. IOM이민정책연구원 자체 사업수입 확대 필요	99

[법제처]

I. 예산안 개요 / 105

1. 현 황	10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06
3.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07



II. 주요 현안 분석 / 108

1.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의 문제점 108

III. 개별 사업 분석 / 111

1. 온라인 홍보 플랫폼 '여기로(Here-Law)'의 운영 활성화 필요 111
2. 남북법제 사업의 타 부처 사업과 연계 추진 강화 필요 115

[감사원]

I. 예산안 개요 / 121

1. 현 황 12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22
3.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23

II. 개별 사업 분석 / 124

1. 감사권익보호관 제도 활성화 필요 124



[대법원]

I. 예산안 개요 / 129

- 1. 현 황 129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33
- 3.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34

II. 주요 현안 분석 / 135

- 1. 일반회계 적정 세입예산 편성 필요 135
- 2.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예산의 문제점 139
 - 2-1. 일반인건비 내 증원인력 인건비 조정 필요 140
 - 2-2. 사법연수원 교수 봉급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41
 - 2-3. 법원공무원교육원 신규 임용자 채용·교육계획 국회 제출 필요 143

III. 개별 사업 분석 / 147

- 1. 시설관리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마련 필요 147
- 2.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외국어발급시스템 구축 계획 보완 필요 150
- 3. 등기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수수료 절감 노력 필요 153
- 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규모 조정 필요 155



[헌법재판소]

I. 예산안 개요 / 161

- 1. 현 황 161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62
- 3.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63

II. 개별 사업 분석 / 164

- 1. 헌법재판소 증축청사 공정관리 강화 필요 164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9,4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500만원(19.0%) 증가하였다.

[2019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20	79	79	94	15	19.0

주: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937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8억원(4.2%) 증가하였다.

[2019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75,126	89,898	89,868	93,669	3,801	4.2

주: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한편,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19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정보화 추진 사업 예산이 일부 증액되었고, ② 비상 대비시설 개보수 및 이동형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예산이 확대되었다.

2019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비서실은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한편, 불용 최소화를 위해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019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 중 세부사업 기준으로 신규 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에는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이 있다.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은 비상대비시설 개보수 및 이동형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비용이 신규로 반영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8		2019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개)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476	476	1,496	1,020	214.3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8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의 효율적 수행 필요

가. 현황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¹⁾은 청와대 경내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개선을 통해 각종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47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시설관리 및 개선	4,205	4,782	4,782	4,782	0	0
운영비	2,383	2,690	2,690	2,700	10	0.4
건설비	1,822	2,092	2,092	2,082	△10	△0.5

자료: 대통령비서실

나. 분석의견

대통령비서실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청와대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 예산안은 운영비와 건설비로 구성된다.

운영비는 청와대 내 시설·기계·전기·통신설비 유지 및 보수에 소요되는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것이며, 건설비는 본관, 여민관 등 건물 개보수를 위한 비용이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131-303

동 사업 예산은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하였으나, 불용액도 함께 증가하여 집행률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2015	4,328	4,177	96.5	151
2016	4,584	4,105	89.6	479
2017	4,782	4,205	87.9	577

자료: 대통령비서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은 2019년 예산안에 2017년과 동일한 4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청와대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불용 최소화를 위해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경호처

1 현황

대통령경호처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1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1.6%) 감소하였다.

[2019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73	125	125	123	△2	△1.6

주: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886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4,600만원(1.0%) 감소하였다.

[2019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0,704	89,485	89,485	88,639	△846	△1.0

주: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한편, 대통령경호처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19년도 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특수활동비는 전년 동액으로 편성하였으며, ② 공무원직 근로자 추가채용을 위해 상용임금을 증액 편성하였다.

2019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의 과거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에 유의하는 한편, 경호안전교육원의 교육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대통령경호처의 2019년도 신규사업 및 2018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다.

1

경호안전교육원 교육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가. 현황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¹⁾은 2016년 완공된 경호안전교육원 운영을 위한 사업이며,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5,500만원 감소한 20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다.

경호안전교육원은 경호경비에 관한 전문 교육시설로 대통령경호처 직원에 대한 교육, 국가 경호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²⁾

[2019년도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경호안전교육원운영	1,813	2,135	2,135	2,080	△55	△3.0

자료: 대통령경호처

정주환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 1) 코드: 일반회계 1231-304
- 2)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호안전관리 관련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2. 대통령경호처 직원에 대한 교육
 3. 국가 경호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
 4. 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5. 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6. 그 밖에 국가 주요 행사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조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나. 분석의견

대통령 경호처는 동 사업의 과거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에 유의하는 한편, 경호안전교육원의 교육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에 편성되었던 인건비는 2018년과 2019년에 편성되지 않았다.³⁾ 반면, 2017년에 편성되지 않았던 건설비와 유형자산이 2018년에 편성되었고, 2019년에는 그 중 유형자산만 편성되었다.

[최근 3년간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의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2017		2018 예산	2019 예산안
	예산	결산		
인건비	856	599	0	0
운영비	1,394	1,108	1,349	1,764
연구용역비	140	106	188	155
건설비	0	0	16	0
유형자산	0	0	582	161

자료: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의 2019년 편성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연구용역비와 건설비, 유형자산 내역은 전년 대비 감액되었다. 반면, 운영비의 예산안 규모는 17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500만원, 2017년 결산액 대비 6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9년에도 전년 대비 집행률 제고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2018년의 경우 경호안전교육원의 교육 인원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여, 집행이 원활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경호안전교육원의 2018년 8월말까지 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경호처 직원 대상의 자체교육 인원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탁교육 인원 증가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3) 동 사업 인건비는 2018년부터 인건비 세부사업에 편성되었다.

[연도별 경호안전교육원 교육 인원]

(단위: 명)

연도	자체교육	수탁교육	합계
2016	3,035	509	3,544
2017	2,533	1,099	3,632
2018. 8월말	6,221	1,122	7,343

자료: 대통령경호처

실제로 동 사업의 2018년 8월말 기준 집행액은 9억 9,600만원으로 예산액 21억 3,500만원 대비 집행률은 46.7%에 불과한 실정이다.

동 사업의 운영비는 교육 및 훈련 소모품비와 장비유지비, 전기료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유류비 등으로 구성되므로, 운영비 집행률은 경호안전교육원의 교육 실적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경호처는 2017년 집행실적과 2018년 사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규모에 유의하는 한편, 경호안전교육원의 교육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회

1 현황

국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국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26억 1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억 5,200만원(10.7%) 증가하였다.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436	2,349	2,349	2,601	252	10.7

자료: 국회

국회 소관 2019년도 총지출은 6,380억 8,4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29억 2,300만원(5.4%) 증가하였다.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50,007	605,161	605,161	638,084	32,923	5.4

자료: 국회

한편, 국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19년도 국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교·안보·통상 등 최소경비를 제외하고 일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② 「국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리 등에 따른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고, ③ 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2차년도 소요 예산으로 80억원을 편성하였다.

2019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사업은 국회도서관의 자료보존 공간 부족 문제 해결 및 국가지식정보 역량 확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로 연장된 기한 내 차질 없이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회미래연구원 사업은 2018년 5월 개원한 국회미래연구원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사업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의 인건비가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인 1.8%를 초과하여 편성된 점, 2019년도 연구과제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예산 심의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국회의 2019년도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 3억 5,000만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기존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운영지원 사업이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운영지원 사업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운영지원 사업으로 분리되어 각각 1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2개)	교육위원회운영지원	175
	문화체육관광위원회운영지원	175
합 계		350

자료: 국회

2019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열린국회행사지원, 국회기록물관리, 전자도서관운영 등이 있다.

① 열린국회행사지원 및 국회기록물관리 사업은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에 따른 관련 사업비 반영으로 증액되었고, ② 전자도서관운영 사업은 자료관리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및 전자도서관DB 구축 사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증액이 이루어졌다.

[국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8 ¹⁾		2019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개)	열린국회행사지원	1,531	1,531	2,271	740	48.3
	국회기록물관리	497	497	763	266	53.5
	전자도서관운영	10,023	10,023	16,090	6,067	60.5

주: 1) 주요 증액사업은 2018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국회

1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가. 현황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사업¹⁾은 국회도서관의 자료보존 공간 부족 문제 해결 및 국가지식정보 역량 확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2,800만원이 증액된 79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1,713	6,268	6,268	7,996	1,728	27.6
건설보상비	0	2,782	2,782	0	△2,782	순감
기본조사설계비	557	0	0	0	-	-
실시설계비	1,156	0	0	0	-	-
공사비	0	3,079	3,079	7,613	4,534	147.3
감리비	0	392	392	368	△24	△6.1
시설부대비	0	15	15	15	0	0

자료: 국회

나. 분석의견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사업이 사업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영미 예산분석관(ymlce@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033-301

국회는 당초 2016~2019년 총사업비 397억 4,300만원을 소요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에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건립부지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으로 변경되는 등 사업내용의 변경과 이에 따른 지연이 발생하여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로 연장되고 총사업비는 35억 9,900만원 증액된 433억 4,200만원으로 변경된 상황이다.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사업계획]

구 분	당초 계획	변경 계획
건립위치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시민공원 내)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국제신도시 내 근린공원 부지(3633번지 외 1필지)
건립규모	· 대지면적: 10,000㎡ · 연 면 적: 13,400㎡	· 대지면적: 32,000㎡ · 연 면 적: 13,661㎡
총사업비	· 397억 4,300만원	· 433억 4,200만원
추진경과 및 계획	<국회도서관> · '14.10.~'15.12. 건립계획안 수립	<국회도서관> · '14.10.~'15.12. 건립계획안 수립 · '15.12.~'16.3. 건립부지 선정 (부지변경: 시민공원→국제신도시)
	<국회사무처> · '16.1.~4. 기본계획수립 용역 · '16.5.~7. 설계업체 선정 · '16.8.~'17.7. 기본 및 실시설계 · '17.8.~12. 시공업체 선정 · '18.~'19. 공사실시	<국회사무처> · '16.4.~9. 기본계획수립 용역 · '16.9.~12. 설계업체 선정 · '17.1.~12. 기본 및 실시설계 · '18.3. 입찰방법 심의 · '18.4.~12. 시공업체 선정 · '19.~'20. 공사실시

자료: 국회

동 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1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건립부지 변경 등에 따른 설계기간 부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17억 1,300만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다. 2017년에는 이월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17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에는 부지매입과 공사·감리 등을 위한 6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8년 9

월 말 현재 부지매입비 27억 7,300만원만을 집행한 상황이다. 공사비 30억 7,900만원, 감리비 3억 9,200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 등 총 34억 8,600만원은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이 2018년 12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2019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2016~2020년 예산 집행액 및 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이월액
2016	1,807	94	0	1,713
2017	0	1,713 (이월)	0	0
2018 (9월 기준)	6,268	2,773	-	3,486 (예상)
2019	7,996	-	-	-
2020	27,271	-	-	-

자료: 국회

이에 대해 국회는 2018년 12월 경 시공업체 선정 이후 건립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파일 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급자재 구매 등으로 초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립 공사 특성 상 2019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과다한 이월이나 불용 없이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²⁾

따라서 국회는 동 건립 사업이 연장된 사업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 국회는 2019년도 공사비 예산현액이 전체 공사비(362억 4,700만원)의 약 30% 수준인 106억 9,200만원(전년도 이월액 30억 7,900만원과 2019년도 공사비 예산액 76억 1,300만원의 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 현황

국회미래연구원 사업¹⁾은 미래 환경의 예측·분석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8년 5월 개원한 국회미래연구원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사업이다.

국회는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1억 2,900만원이 증액된 50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운영개월 수 증가(9 → 12개월), 인건비 및 연구사업비 단가 인상 등의 증액소요를 반영한 결과이다.

[2019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회미래연구원	-	3,918	3,918	5,047	1,129	28.8
기관운영출연금 (350-01목)	-	2,333	2,333	2,254	21	0.9
인건비 (110목)	-	1,308	1,308	1,905	597	45.6
사업출연금 (350-02목)	-	1,685	1,685	2,793	1,108	65.8

자료: 국회

나. 분석의견

국회는 국회미래연구원 사업의 예산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건비가 2019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인 1.8%를 초과하여 편성된 측면이 있다.

이영미 예산분석관(ymlce@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034-308

국회미래연구원의 2019년 인건비는 전년 대비 5억 9,700만원 증액된 19억 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증액분 5억 9,700만원 중 4억 3,500만원은 국회미래연구원이 2018년도에 9개월간 운영됨에 따라 미편성되었던 3개월분에 대한 증가분²⁾이며, 나머지 1억 6,200만원은 인건비 인상률(1.8%) 적용 및 인건비 단가 증가(8,300만원 → 9,430만원)에 따른 인상분이다.

[2018~2019년 국회미래연구원 인건비 산출 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연도	산출방식	최종 예산액
2018	83(인건비 단가)*21명*100%=1,743	1,308 (9개월분 반영)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3(인건비 단가)*21명*95%=1,881 • 인건비 인상률 1.8%=24 	1,905

주: 2018년도에는 개원 시기가 5월인 것을 고려하여 9개월분인 13억 800만원 최종 편성
자료: 국회

즉 미편성 3개월분에 대한 증가분을 제외한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률은 9.3%로, 결과적으로 이는 정부가 정한 2019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인 1.8%보다 7.5%p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회미래연구원은 2018년 당시 인건비 단가가 과소 책정되어 2019년에 이를 적정 수준으로 조율하였고, 이에 따른 인건비 단가 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8년 당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직의 평균 인건비 단가인 8,600만원을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하였으나, 2019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 등 상위 10개 기관의 박사급 연구직 평균 인건비 단가인 9,90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건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임금 인상률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인건비 단가를 인상하여야 할 당위성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바, 국회의 예산안 심의 시 2019년 인건비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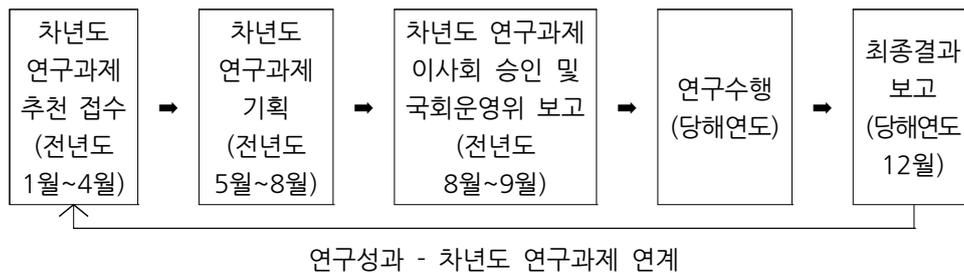
²⁾ 2018년 인건비의 경우 국회미래연구원의 개원 시기가 5월인 것을 고려하여 12개월분 인건비로 책정된 17억 4,300만원 중 9개월분인 13억 800만원만이 최종 편성되었다.

둘째, 국회미래연구원의 2019년 연구과제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과제 추천 및 선정과 관련하여 「국회미래연구원법」 제 14조는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연구과제를 추천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 선정 결과와 연구계획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의장 및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미래연구원은 전년도 1~4월에 차년도 연구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5~8월에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연구과제를 기획하며, 8~9월에 차년도 연구과제에 대한 이사회 승인 및 최종 보고를 거치는 내부 절차를 두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수행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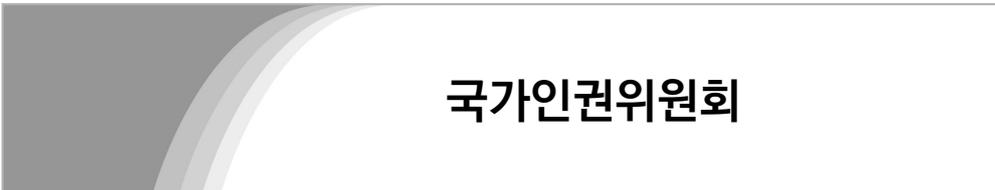
자료: 국회

그러나 국회미래연구원은 2018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연구수행 당해연도인 2018년 7월 23일 ~ 8월 6일 약 2주간 진행하여 총 7건의 추천과제를 접수받았고, 최종적으로 4건의 연구과제를 기획·선정³⁾하여 8월 28일 이사회 승인 및 국회운영위원회의 보고를 완료하였다. 2018년 연구과제 선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019년 연구과제에 대한 추천 및 선정은 2018년 11월 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018년 5월에 설립되어 연초부터 9개월 간 이루어져야 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9년에 수행할 연구과제의 선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3) ① 미래영향 환경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 연구, ② 국민선호미래 연구, ③ 미래를 위한 선택: 미래 결정 정책변수 연구, ④ 북한 및 통일 한반도의 미래 연구

따라서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연구과제가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통해 기획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1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7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과 동일하다.

[2019년도 예산안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8	17	17	17	0	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9년도 총지출은 369억 7,0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55억 5,800만원(17.7%) 증가하였다.

[2019년도 예산안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8,531	31,412	31,412	36,970	5,558	17.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여성·아동·장애인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제고 분야 예산이 증액되었고(2018년 11억 2,700만원 → 2019년 12억 4,300만원), ② 통계에 기반한 정책 입안 및 인권 상황을 체계적으로 진단 평가하여 새로운 인권수요 개발을 위한 국가인권통계 사업(2019년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③ 지방경찰청별 1개 경찰서에 시민인권보호관을 배치하여 경찰력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상담 등 실시간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시범 도입을 위한 예산(2019년 6억 8,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④ 2018년 6월 개소한 아셈글로벌 노인인권센터가 노인인권 분야의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노인인권 분야 정책개발·연구 예산이 증액되었다(2018년 5억 3,000만원 → 2019년 7억 5,600만원).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역 인권사무소는 지역 내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처리·예방과 지역사회에 특성화된 인권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현재 5개 광역시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12개 광역시도에도 추가적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지역 인권사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 사무소 설치·운영에 대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의 심의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사업은 국가인권통계 생산을 통해 인권상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하고 인권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2019년도 신규 내역사업으로, 국가인권통계의 전반적 프레임워크 및 ‘국가인권상황조사’의 조사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16억 2,500만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e-진정 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 과정을 공개하기 위하여 결정문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국민참여예산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개)	e-진정 시스템 구축 운영	1,625
합 계		1,625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9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인권의식 향상, 취약분야 인권개선,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등이 있다.

① 인권의식 향상 사업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인권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백서 발간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②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은 경찰 업무수행과정에서 대한 민주적 시민통제와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 인권보호관 운영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③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8 ¹⁾		2019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개)	인권의식 향상	392	392	692	300	76.5
	취약분야 인권개선	1,266	1,266	1,939	673	53.2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584	584	1,184	600	102.7

주: 1) 주요 증액사업은 2018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1

지역 인권사무소 설립·운영의 체계적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광주·대구·대전·강원 등 총 5개 지역에 인권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 인권사무소는 지역 내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처리·예방과 지역사회에 특성화된 인권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권리구제, 인권교육, 인권홍보, 인권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 크게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권리구제 기능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각 지역별 인권사무소의 진정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평균 800~900여 건의 진정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2016~2018년 인권사무소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지역	연도	접수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부산	2018	372	347	33	220	2	92	0
	2017	889	877	86	527	13	251	0
	2016	859	862	83	503	9	266	1
광주	2018	386	352	24	227	0	101	0
	2017	955	909	101	514	13	281	0
	2016	888	926	91	502	9	323	1
대구	2018	467	389	50	256	1	82	0
	2017	949	940	141	481	11	307	0
	2016	806	804	109	514	2	179	0
대전	2018	411	408	32	246	1	129	0
	2017	994	985	85	648	18	234	0
	2016	866	896	81	523	16	276	0
강원	2018	107	92	11	61	1	19	0
	2017	260	109	7	74	0	28	0

주: 2018년은 8월 말 기준. 강원인권사무소는 2017년 2월에 개소하여 2016년 수치가 집계되지 않음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이영미 예산분석관(ymlce@assembly.go.kr, 788-4640)

인권사무소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인권문화를 조성, 확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권체험관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부산 1,354명, 광주 3,421명, 대구 2,476명, 대전 2,384명이 교육체험 프로그램¹⁾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 프로그램²⁾의 경우 2017년에 부산 9,134명, 광주 3,421명, 대구 351명, 대전 877명이 관람하였다.

[2015~2017년 인권체험관별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교육체험 프로그램	2017	1,354 (62회)	3,421 (124회)	2,476 (159회)	2,384 (108회)
	2016	500 (36회)	2,596 (108회)	2,360 (161회)	258 (17회)
	2015	358 (20회)	1,494 (63회)	1,887 (124회)	-
전시 프로그램	2017	9,134	3,421	351	877
	2016	4,282	2,596	2,708	755
	2015	2,146	1,494	4,402	-

주: 대전인권체험관은 2016년 6월 개소, 강원인권체험관은 2018년 9월 말 기준 개소 준비 중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7년 5개 인권사무소의 인권홍보 관련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인권영화 상영회, 인권특강, 인권기자단 운영 등 19가지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문화조성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는 2017년 5개 인권사무소에서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 총 37회와 인권순회상담 총 20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지역 사무소별로 해당 광역자치단체 및 유관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인권선언 69주년 기념 주간행사를 진행하였다.

1) 초·중·고·대학생, 경찰관, 장애인, 군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놀이 및 체험을 위주로 하는 인권감수성 향상, 차별의 이해, 장애체험, 인권피플만들기 등의 프로그램 운영

2) 위원회 제작 인권콘텐츠(영화·만화·사진·영상·포스터 등) 상영 및 UN 등 국제기구가 정한 기념주간 별 인권 작품 전시

나. 분석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 인권사무소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 인권사무소 설립에 대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5월 부산·광주, 2007년 7월 대구, 2014년 8월 대전, 2017년 2월 강원에 각각 인권사무소를 개소하여 운영 중이다.

[인권사무소별 운영 현황]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개소 일시	2005.5.	2005.5.	2007.7.	2014.8.	2017.2.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1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30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73
정원 (현원)	7명 (7명)	7명 (8명)	7명 (8명)	7명 (8명)	6명 (6명)

주: 정원 및 현원은 2018년 8월 말 기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5개 지역 이외의 12개 광역시도에도 추가적으로 인권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나, 전국적으로 설치될 인권사무소의 총 개수, 설치 완료 시기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기 설치된 5개 지역 인권사무소 또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닌, 해당 지역 인권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등 당시의 필요성과 수요에 대응하여 추진된 경향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순회상담,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지역사회 수요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의 엄격한 직제 심사를 거쳐 인권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절차상의 문제는 크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합리적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종합적인 청사진 없이 인권사무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장기 재정운용, 사업의 일관적 추진 등에 있어서 비효율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 인권사무소의 설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인권사무소 예산의 심의 및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 인권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인건비’(1001-100), ‘기관운영 기본경비’(1011-200, 1011-250), ‘지역인권문화 확산’(1031-303),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 사업의 내역사업 혹은 내내역사업으로 각각 분산하여 편성하고 있다.

[2019년 지역 인권사무소 운영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예산 편성	단위사업	인건비	기본경비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인권교육 활성화
	세부사업	인건비(총액)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기관운영 기본경비	지역인권문화 확산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내역사업 (내내역)	-	-	- 인권체험관 운영 • 47.6×5개소=238 - 시민참여형 인권문화 확산 • 6×5개소=30 - 인권문화조성 네트워크 운영 • 13.2×5개소=66	- 인권연수과정 운영 (인권교육센터 운영) • 59.4×5개소=297
	2019 예산액	179 ¹⁾	799	334	297

주: 1) 별도수당을 제외한 42명분의 봉급만 포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이러한 예산 편성 구조로 인하여 지역 인권사무소의 전반적인 예산 규모가 쉽게 파악되지 않고 각 사무소별 예·결산의 심의 및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 인권사무소의 예산 편성 시 적합한 심의 절차를 적용하고 예산 집행을 보다 철저한 감시·감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국가인권통계 구축의 조속한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가. 현황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사업¹⁾은 국가인권통계 생산을 통해 인권상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인권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신규 내역사업으로, 예산안으로 6억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612	584	584	1,184	600	102.7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0	0	0	600	600	순증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통계는 기존 국가 승인통계 및 행정자료를 가공하여 얻은 통계표와 ‘국가인권상황조사’로 명명되는 정기적 사회조사를 그 구성 요소로 하여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객관적,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2018년에는 기본 계획 수립, 통계청과의 MOU 추진, 프레임워크 및 통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이영미 예산분석관(ymlce@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034-301의 내역사업

등, 2019년에는 ‘국가인권상황조사’ 실시, ‘대한민국 인권상황 보고대회’ 시범 개최 등, 2021년 이후에는 홈페이지 및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연도	추진내용
2018	①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3월 초) ② 통계청과 MOU 추진(3~4월) ③ 국가인권통계 자문위원회 구성(3~4월) ④ 국가인권통계 관련 방안 연구(연구용역) 진행(3~11월, 통계청 협조) 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준비(관련기관 자문 등)
2019	① ‘국가인권상황조사’ 실시 ② ‘2019년 대한민국 인권상황 보고대회’ 시범 개최(향후 정기 개최 검토) ③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제출(기획재정부)
2020	① 국가인권통계 DB 온라인서비스(시범) 실시 ② ‘국가인권상황조사’ 실시(통계청 대행) ③ ‘2020년 대한민국 인권상황 보고대회’ 개최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나. 분석의견

국가인권통계의 전반적 프레임워크 및 ‘국가인권상황조사’의 조사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내역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9년 예산안에 총 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가인권상황조사’의 통계청 조사대행에 소요되는 5억원, ‘국가인권상황조사’ 실시 후 결과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내역사업 예산편성 내역]

(단위: 천원)

항목	세부내역	금액
통계청조사 대행	• 인건비: 69,814 • 조사비용: 430,186	500,000
국가인권통계 조사 및 분석 등 연구용역	• 연구용역: 100,000,000원*1식=100,000	100,000
합 계		600,0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이 중 통계청 조사 대행을 위해 편성된 5억원의 경우, 국가인권통계의 전체적 프레임워크 및 ‘국가인권상황조사’의 조사문항, 조사주기, 표본설계 등이 2018년 9월 말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추계가 이루어져 그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동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²⁾이 2018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이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포함된 사회조사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10,000개의 표본, 5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바, 이에 대해 통계청의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조사에 있어 조사문항의 수, 표본추출 방식, 조사방법 등에 따라 필요 조사원의 수, 조사 기간 등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적정 비용이 산출되므로, 표본 수만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규모를 도출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동 사업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수립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인권통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410개 지표를 선정하였고, 2017년에는 ‘인권통계 생산 및 축적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410개 지표 중 110개 주요 지표를 선별하였으며, 2018년에는 ‘국가인권통계 프레임워크 및 통계 구축’ 연구용역을 통해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국가인권통계의 프레임워크, 통계표, 국가인권상황조사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 현황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사업¹⁾은 국가인권위원회 전직 조사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인권보호관이 각 경찰관서에 상주하며 부당 체포 및 연행, 강압적 수사, 폭행·폭언, 성희롱 등 경찰력 행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현장에서 견제·감시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신규 내역사업으로, 예산안으로 6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취약분야 인권개선	1,086	1,266	1,266	1,939	673	53.2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0	0	0	688	688	순증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나. 분석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서 내 시민인권보호관의 독립된 상주 공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전국 총 19개 경찰관서에 시민인권보호관을 배치하여 동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대상 경찰관서는 기관의 규모와 경찰업무 관련 민원·감찰요구·진정 접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선정되며, 시

이영미 예산분석관(ymlce@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033-301의 내역사업

민인권보호관으로 활동할 전문상담위원은 각 광역 시도 변호사회,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위촉될 예정이다.

동 사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인권보호관으로 활동하는 상담위원에게 지급될 사례비, 안내물 제작 등을 위한 운영비 6억 5,700만원, 사전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3,100만원을 2019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내역사업 예산편성 내역]

(단위: 천원)

항목	세부내역	금액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비: 80,000원×2명×21일×19개 관서×10개월=638,400 • 안내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 리플릿 제작: 3,000,000원×2회=6,000 - 입간판 등 제작: 300,000원×1회×19개 관서=5,700 • 운영 여비: 20,000원×2명×19개 관서×8회=6,080 • 업무협약: 10,000원×12명×2회×5권역=1,200 	657,380
사전 인권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료: 200,000원×5명×2회×5권역=10,000 • 교재인쇄비: 10,000원×200권×5권역=10,000 • 교육장소 임차: 500,000원×2회×5권역=5,000 • 운영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800원×3명×2회×5권역=2,274 - 25,000원×3명×2회×5권역=750 • 교육과정 운영: 7,000원×80명×5권역=2,800 	30,824
합 계		688,204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동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2018년 7~12월 강남경찰서와 종로경찰서 각각에 2명의 상담위원을 배치하여 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현장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현장상담센터 운영의 성과로 2018년 8월 말까지 12건의 상담 및 1건의 진정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상담이나 진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현장에서의 대응·견제·감시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의 운영과정에서 경찰관서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기관 내 상담위원들이 상주 가능한 접근성 높고 독립된 공간의 확보 가능성이 크게 좌우되는 등의 문제점²⁾이 발견되었으나 2019년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에서 공간배치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상담위원,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019년 사업의 집행계획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2) 현재 강남경찰서의 경우 지상 3층에 독립된 공간을 배정받아 상담위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종로경찰서의 경우 지하 1층 북카페에 마련된 공간이 근무지로 활용되고 있어 사건 현장에의 접근성 뿐 아니라 민원인들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부부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법무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교도작업특별회계) 및 1개 기금(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조 6,932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987억원(△15.0%)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 6,144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751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7억원이다.

[2019년도 예산안 법무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572,273	1,990,776	1,990,776	1,689,510	△301,266	△15.7
- 일반회계	1,503,692	1,914,472	1,914,472	1,614,363	△300,109	△15.7
- 교도작업특별회계	66,726	76,304	76,304	75,147	△1,157	△1.5
-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1,855	0	0	0	0	0
기 금	3,722	1,075	1,075	3,656	2,581	240.1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722	1,075	1,075	3,656	2,581	240.1
합 계	1,575,995	1,991,851	1,991,851	1,693,166	△298,685	△15.0

자료: 법무부

법무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3조 7,69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406억원(3.9%)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3조 6,071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677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950억원이다.

[2019년도 예산안 법무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3,519,154	3,541,090	3,541,090	3,674,782	133,692	3.8
- 일반회계	3,461,644	3,474,500	3,474,500	3,607,121	132,621	3.8
- 교도작업특별회계	57,510	66,590	66,590	67,661	1,071	1.6
기 금	85,425	88,060	88,060	94,956	6,896	7.8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5,425	88,060	88,060	94,956	6,896	7.8
합 계	3,604,579	3,629,150	3,629,150	3,769,738	140,588	3.9

자료: 법무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법무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교도작업특별회계)로 구성된다.

법무부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1조 7,412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032억원(△14.8%)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6,144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269억원이다.

[2019년도 법무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503,692	1,914,472	1,914,472	1,614,363	△300,109	△15.7
교도작업특별회계	97,566	129,925	129,925	126,866	△3,059	△2.4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1,855	0	0	0	0	0
합 계	1,603,113	2,044,397	2,044,397	1,741,229	△303,168	△14.8

주: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법무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3조 8,164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319억원(3.6%)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조 6,896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269억원이다.

[2019년도 법무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546,916	3,554,610	3,554,610	3,689,561	134,951	3.8
교도작업특별회계	90,298	129,925	129,925	126,866	△3,059	△2.4
합 계	3,637,214	3,684,535	3,684,535	3,816,427	131,892	3.6

주: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법무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만 구성된다.

법무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011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4,300만원(△0.0%) 감소하였다.

[2019년도 법무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1,207	101,145	101,145	101,102	△43	△0.0

주: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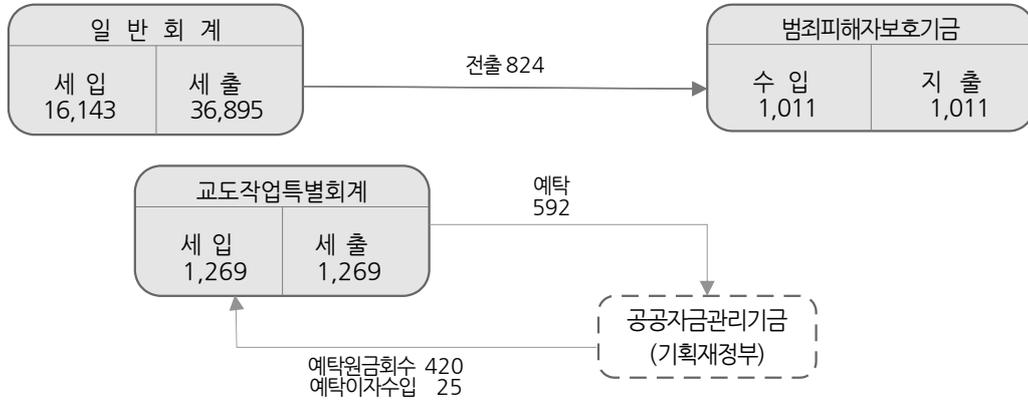
라. 재정구조

2019년도 예산안의 법무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824억원이 진출된다.

교도작업특별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92억원이 예탁되며, 예탁원금회수 420억원 및 예탁이자수입 25억원을 받는다.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법무부

2019년도 법무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및 범죄수익 환수를 적극 지원하고, ② 수용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출소자에 대한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③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고하고, ④ 스마일센터 확충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확대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2019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교도작업 사업은 수행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기술습득을 통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작업 부적격자를 제외한 수행자는 「형법」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700 명의 인원이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정식작업장이 아닌 수용거실에서 작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정 작업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무부는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및 범죄수익환수를 지원하기 위해 대검찰청 인권부(2018.7)와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2018.6)을 신설하였는데, 동 조직들이 신설된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은 선들의러의 우리정부 상대 국제투자분쟁(ISD) 제소에 따라 중재수행 및 대응을 위해 편성된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는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준비를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법무부의 2019년도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 57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은 스위스 ‘쉰들러’의 제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고, 법무시설행정지원 사업은 정부과천청사 내진보강 공사에 따른 법무부 본부 이전을 위한 사업이다.

[법무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2개)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3,017
	법무시설행정지원	2,697
합 계		5,714

자료: 법무부

2019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IOM이민정책연구원운영, 검찰청시설운영, 검찰수사지원,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등이 있다.

① IOM이민정책연구원운영 사업은 연구원 인력증원 및 처우개선비와 연구원 운영비 등이 반영되었고, ② 검찰청시설운영 사업은 수원고·지검 관리용역비 등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③ 검찰수사지원 사업은 검찰통합민원상담센터 구축비가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고, ④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사업은 대전솔로몬로파크 전시물 교체비용이 신규 반영되었다.

[법무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8 ¹⁾		2019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개)	IOM이민정책연구원운영	1,417	1,417	1,864	447	31.5
	검찰청시설운영	53,809	53,809	65,695	11,886	22.1
	검찰수사지원	20,074	20,074	27,250	7,176	35.7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4,632	4,632	6,229	1,597	34.5

주: 1) 주요 증액사업은 2018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법무부

II

주요 현안 분석

1 수형자 교도작업 이행률 제고 노력 필요 등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는 「교도작업특별회계법」(1961년 제정)에 근거하여 교정기관의 교도작업 운영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별도의 국고보조 없이 교도작업에 따른 자체수입금으로 소요경비를 충당한다. 현재 전국 52개 기관에서 일평균 22,000여 명이 교도작업¹⁾에 종사하며 직영물품(피복, 식품) 등 200여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교특회계 세입의 대부분은 교도작업 수입이고, 기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예탁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출은 교도작업 수행을 위한 작업재료비, 작업장 신축 등 시설보완비, 공자기금 예탁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		(B-A)	%
총 계	90,298	129,925	129,925	126,866	△3,059	△2.4
1535교도작업운영 및 직업훈련	56,973	66,004	66,004	67,093	1,089	1.6
교도작업(1535-300)	49,548	52,881	52,881	53,517	636	1.2
직업훈련(1535-301)	5,298	5,826	5,826	5,426	△400	△6.9
시설보완(1535-302)	2,126	7,297	7,297	8,150	853	11.7
7012 본부기본경비	314	359	359	348	△11	△3.1
교특회계기본경비(7012-250)	314	359	359	348	△11	△3.1
7019 소속기관기본경비	224	227	227	220	△7	△3.1
소속기관기본경비(7019-250)	224	227	227	220	△7	△3.1
8910 공공자금예탁	32,787	63,335	63,335	59,205	△4,130	△6.5
공공자금예탁(8910-890)	32,787	63,335	63,335	59,205	△4,130	△6.5

자료: 법무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작업의 종류는 직영작업, 위탁작업, 노무작업, 운영지원작업으로 구분된다.

1-1. 교도작업 정역 집행을 제고 및 작업환경 개선 노력 필요

가. 현황

「형법」 제67조 및 제69조2)에 따르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형무소에 구치되어 작업(정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작업의무 수행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수형자의 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작업을 부과하여 정역을 집행하고, 부수적으로는 해당 작업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체 수형자 중 미결수를 제외한 기결수 35,242명 중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분류된 작업부과 부적격자 11,324명을 제외한 적격자는 23,918명 가운데 작업장 부족으로 작업장³⁾에 배정되지 못한 인원이 3,673명이다(2018년 7월말 기준). 이중 1,870명은 수용거실에서 교도작업(거실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803명은 작업장 부족으로 인하여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형법」

제67조(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3) 작업장 배정자는 직영작업, 위탁작업, 외부통근, 운영지원 인력으로 구성된다.

- 직영작업: 교정시설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작업으로 목공, 봉제, 인쇄, 식품, 영농 등 24개 기관(69개 작업장)에서 수행
- 위탁작업: 외부업자로부터 기계 및 재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작업으로 쇼핑백, 자동차 부품조립, 문구류 조립 등 45개 기관(258개 작업장)에서 수행
- 노무작업: 민간기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작업으로 ①외부통근방식은 9개 기관(11개 작업장), ②개방지역작업은 24개 기관(46개 작업장)에서 수행
- 운영지원: 52개 교정시설 운영상 필수적인 취사, 세탁 등의 작업 수행

[수형자 정역 집행률 현황]

(단위: 명)

연도	총원 (기결수)	작업부과 부적격자	작업부과 적격자				정역 집행률 (C/A)
			계(A)	작업장 배정자 (C=A-B)	거실작업자	순수 미작업자 (B)	
2014	32,867	9,085	23,782	21,471	2,010	2,311	90.3%
2015	34,425	10,458	23,967	22,090	2,211	1,877	92.2%
2016	36,082	12,154	23,928	22,100	2,399	1,828	92.4%
2017	35,990	11,613	24,377	22,265	2,113	2,112	91.3%
2018 ¹⁾	35,242	11,324	23,918	22,115	1,870	1,803	92.5%

주: 1) 7월 말 기준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작업 부적격자를 제외한 수형자는 「형법」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700명의 인원이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정상적 작업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정 규모 및 수준의 작업환경 확보가 필요하다.

작업 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부족으로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수형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식 작업장이 아닌 수용거실에서 수행하는 소위 ‘거실작업’의 경우에도 생활공간과 작업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작업여건 상 주로 쇼핑백 제작 등의 단순작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출소 후 활용 가능한 기술 습득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일평균 2,000~3,000원의 낮은 작업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수형자들의 선호도 낮은 편이다.⁴⁾

따라서 법무부는 해당 인원(작업 미종사자 1,803명, 거실작업자 1,870명까지 포함 시 총 3,673명)의 교도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작업장을 확보하고, 나아가 출소 후 구직과 연계되는 취업연계형 교도작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⁵⁾

4) 참고로, 개방지역 작업을 수행하는 수형자 1명당 일평균 작업장려금은 약 12,000원이다.

5)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2018년 교특회계 예산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취업유망 직업훈련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작업장 보완을 위하여 시설보완⁶⁾ 사업에 2017년 22억 1,500만원, 2018년 7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1.7%가 증가한 8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공사비 57억 5,600만원으로 미 작업자 215명 해소를 위한 작업장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작업 미종사자 1,800여 명의 정역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작업장이 신설되어야 하므로, 향후 취업연계형 교도작업장 등 기존의 단순 교도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1-2.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규모 조정 필요

가. 현황

법무부는 공공자금예탁⁷⁾ 사업을 통해 2019년 교특회계 세출예산안 총액 1,268억 6,600만원 중 46.7%인 592억 500만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 예탁할 계획이다. 이는 교특회계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공자기금에 예탁함으로써 정부 재정운영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기금예탁에 따른 일정 이자수익을 얻는 형태로 교특회계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도 공공자금예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공자금예탁	32,787	63,335	63,335	59,205	△4,130	△6.5

자료: 법무부

프로그램 개발, 교도작업 발굴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주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기간: 2018. 6~11., 예산액: 1억 6,000만원)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6) 코드: 교도작업특별회계 1535-302

7) 코드: 교도작업특별회계 8910-890

나. 분석의견

교특회계의 공자기금 예탁 규모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탁금 비중을 줄이고 교특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특회계의 2019년도 공자기금 예탁금은 2018년 633억 3,500만원에 비해 6.5% 감소하였으나 2017년 예산액 327억 8,700만원보다 80% 이상 증가한 금액이며, 전체 교특회계에서 공자기금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36.3%, 2018년 48.8%, 2019년 46.7%로 특별회계의 사업비 대비 공자기금 예탁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다.

국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교특회계 세출예산의 상당 비율을 공자기금에 예탁하게 되면 교도작업운영 및 직업훈련사업 등 주요 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규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교도작업운영 및 직업훈련 등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집행이 곤란하므로 “교도작업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축소 필요”라는 시정요구(제도개선)를 한 바 있다.

2019년도 예산안 특별회계 전체 재원의 약 1/2을 공자기금으로 예탁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공자기금 예탁규모를 줄여가는 한편, 교특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교도작업, 직업훈련 및 시설보완 사업에 재원을 추가 배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교특회계 총 세출예산액(A)	90,298	129,925	126,866
세계잉여금	7,268	8,000	7,268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산액(B)	32,787	63,335	59,205
비중(B/A)	36.3	48.8	46.7

자료: 법무부

III

개별 사업 분석

1

대검찰청 신규 조직의 면밀한 운영계획 수립 필요

가. 현황

검찰수사지원 사업¹⁾은 범죄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 활동 및 전문 수사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5.7% 증가한 272억 5,000만원이다.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사업²⁾은 국가 형벌권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자유형·재산형 미집행자 추적 검거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3% 증가한 14억 8,200만원이다.

법무부는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및 범죄수익환수를 지원하기 위해 대검찰청 인권부(2018.7)와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2018.6)을 신설하였다. 동 신규 조직들의 운영을 위한 2019년도 예산안은 각각 5억 3,100만원 및 3억 1,400만원으로, 검찰수사지원 사업과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2019년도 대검 인권부 및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 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검찰수사지원	19,387	20,074	20,074	27,250	7,176	35.7
· 대검 인권부 운영지원	0	0	0	531	531	순증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1,378	1,285	1,285	1,482	197	15.3
· 해외 불법재산환수 · 합동조사단 지원	0	0	0	314	314	순증

자료: 법무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335-300

2) 코드: 일반회계 1337-301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대검찰청 인권부와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신설된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고 검찰의 역할을 ‘수사기관’에서 ‘인권보호’ 기관으로 재정립하려는 취지에서 대검찰청에 인권 업무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자 신설된 조직이다. 현재 대검 인권부는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권부 산하에 인권수사자문관³⁾이 배치되어 있다. 직급별로는 검사 총 12명, 검찰 일반직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찰청 인권부는 신설 이후 검찰의 각 업무 영역에서 인권친화적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인권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및 간담회 정례화를 통한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권부는 전국 검찰청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용률이 저조했던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인권침해 신고 및 인권정책 제안을 용이하게 하고, 단순히 신고를 접수하는 기능 외에 민원인들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등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대검찰청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은 해외 재산 관련 위법사항과 관련한 국세청, 관세청, 검찰의 권한과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등 현행 해외 불법재산환수 공조체계의 문제점 해결과 해외 불법재산 도피 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 현재 합동조사단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검찰 등 유관기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력검사 2명, 검찰 수사관, 유관기관 직원 등 총 17명 규모이다.

합동조사단은 정보분석 단계에서 중요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선 지방국세청, 본부세관, 지방검찰청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분석→조사→처벌→범죄수익환수’까지 Fast-Track으로 처리, 수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법무부는 합동조사단 출범 후 참여기관 간 협업을 통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안이 있으나, 동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3) 법무부는 검찰 수사의 적정성 강화 목적으로 대검 인권부에 고검검사급 인권수사자문관을 5명 배치(2018.7.23.)하였다. 인권수사자문관은 검찰의 주요 수사과정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 또는 ‘레드팀(red team)’ 역할을 수행한다.

대검찰청 인권부와 합동조사단의 운영을 위한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각각 5억 3,100만원 및 3억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2019년도의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은 미흡한 상황이므로 법무부는 대검찰청 인권부와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신설된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9년도 대검찰청 인권부 예산안 세부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코드)	산출내역	예산액
일반수용비(210-01목)	자료·도서 구입 및 책자 발간(1개청×9,917천원×12개월)	119
연구용역비(260-01목)	인권정책 관련 연구용역(4개과제×20,000천원)	80
국내여비(220-01목)	인권수사자문관 출장 여비	263
국외여비(220-02목)	선진국 인권업무 시스템 습득(1개청×3,000천원×12개월)	36
임차료(210-07목)	인권감독관련 행사장 등 장소 임차 비용(500천원×2회)	1
사업추진비(240-01목)	인권감담회 및 인권감독관회의 개최(22명×727천원×2회)	32
합계	-	531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년도 대검찰청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예산안 세부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코드)	산출내역	예산액
국내여비(220-01목)	1개단×33천원×20명×12개월	8
국외여비(220-02목)	1개단×20명×704천원×12개월	169
업무추진비(240-01목)	1개단×20명×92천원×12개월	22
특정업무경비(250-03목)	1개단×6명×180천원×12개월	14
기타보전금(310-04목)	(참고인여비)1개단×250천원×12개월	3
자산취득비(430-01목)	복사기, 문서세단기 및 사무집기 등 1개단 ×3,083천원×12개월	37
일반수용비(210-01목)	사무용품등 비품구입비 1개단×20명×121천원×12개월	29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	1개단×20명×38천원×12개월	6
특근매식비(210-05목)	6,000원 × 4일 × 20명 × 12개월	6
임차료(210-07목)	승용차 2대 × 480천원×12개월	12
유류비(210-08목)	2대×월 7회×150km×2,000원÷10km(연비)×12월	8
합계	-	314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¹⁾은 원달러의 우리정부 상대 ISD 제소가 예상됨에 따라 중재수행 및 대응을 위해 편성된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30억 1,700만원이다.

ISD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의미하는데, 이는 투자유치국이 투자협정을 위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제소하여 국제중재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2019년도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0	0	0	3,017	3,017	순증

자료: 법무부

동 중재수행 및 대응에 따른 예산으로 법무부는 대리 로펌 선임 비용, 중재판정부 설치 비용(중재인 선임, 중재기관 행정 비용 등), 심리기일 참석 비용(정부 관계자, 로펌 변호사, 전문가 증인 등 항공·숙박료) 등을 산정하고 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032-308

[2019년도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예산안 세부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내역
국내로펌 법률자문비용	\$493×7명×250시간=949
국외로펌 법률자문비용	\$985×6명×250시간=1,625
중재인선임비 등 중재비용	182
감정인 등 전문가비용	228
국외여비	2회×(4명×5일×0.7)2=8
임차료	2회×2=4
계	3,017

주: 달러당 기준환율 1,100원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투자자-국가 소송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는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준비를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선들러社は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주로서, 금융감독원이 2013~2015년 동안 현대 엘리베이터의 경영권 방어 목적 유상증자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 제기에 관하여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부속 투자협정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 3월 7일 대한민국 정부에게 투자분쟁 관련 협의요청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이루어진 분쟁대응단이 구성되어 동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법무부 법무실장이 분쟁대응단장을 맡고 있다.

한-EFTA FTA 부속 투자협정 제16조²⁾에 따르면, 선들러는 협의요청서 접수일

2) 「한-EFTA FTA 부속 투자협정」 제16조

1. 당사국의 투자자가 다른 당사국이 적용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하여 그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투자에 손실 또는 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투자자는 그 사안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서면 협의요청일로부터 6월의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안은 해당 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법원 또는 국제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국제중재에 회부되는 경우, 투자자는 다음 중에서 선택권을 가진다.

가. 1965년 3월 18일에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의 투자분쟁

인 2018년 3월 9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8년 9월 9일부터 ICSID 규칙 또는 UNCITRAL 규칙에 따른 중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 선들러는 2018년 10월 11일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선들러는 중재신청서에서 기존 협의요청서의 내용에 덧붙여, 2015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전환사채 발행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도 한-EFTA FTA 부속투자협정상 투자자보호의무에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총 3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무부는 선들러의 중재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로펌 협의, 중재인 선정, 중재판정부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다.

해결에 관한 협약>이 이용가능한 경우, 이 협약에 의하여 규정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추가절차규칙>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 또는 다.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중재규칙에 따라 설치될 특별 중재판정부

3.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 투자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제2항에 따라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데에 대하여 이로써 사전동의를 부여한다. 다만, 분쟁투자자가 중재청구가 제기되기 전 최소 60일 전에 자신의 의사를 분쟁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중재신청 후 대응계획]

일 시	내 용	비 고
D-day (중재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신청 사실 관계부처 즉시 통보 - 중재신청서 초기 분석 착수 - 법무부 자체 검토 후 로펌과 협의 	보도자료 배포
D+1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 중재인 선정 	-
D+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중재인 선정 	-
D+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보도자료 배포
D+9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서면 제출 - 정부대리로펌 작성, 법무부 검토 후 제출 	3개월 간격으로 2회 제출 예정
D+14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기일 개최 - 양측 합의에 따른 중재지에서 1~2회 개최 -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응단, 정부대리로펌 참석 	5~7일 진행 예정
D+20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 후 서면 제출 - 정부대리로펌 작성, 법무부 검토 후 제출 	3개월 간격으로 2회 제출 예정
D+3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정 선고 	필요 시 불복 절차 개시 가능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투자자-국가 소송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는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준비를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무부는 소송수행 상 보안사항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예산산출내역을 제출·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라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과 및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관리와 함께 중재판정 종료 즉시 세부내용에 대한 국회 제출 및 보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현황

법무부는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¹⁾에서 2014년부터 법령경연 학술대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전국의 법과대학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대회 참가자들이 법령안의 제안이유, 신구조문대비표 등 실제 법령 제·개정 시 필요한 서류로 법령안을 직접 만들고, 예선을 통과한 작품들 중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본선을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는 대회이다. 법무부는 동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법률안 제·개정의 기초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법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4,350만원으로, 외부 심사위원 수당 및 수상자 상금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210-01목) 3,600만원과 임차료(210-07목) 600만원, 업무추진비(240-01목) 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도 법령경연 학술대회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1,229	1,157	1,157	1,041	△116	△10.0
법령경연 학술대회	39	44	44	44	0	0.0

자료: 법무부

[2019년 법령경연 학술대회 사업 예산 편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세목코드)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일반수용비(210-01목)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당, 상금 등(36=1회 ×36백만원)	36
임차료(210-07목)	법령경연 학술대회 장소 임차료(6=1회 ×6백만원)	6
업무추진비(240-01목)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2
합 계		44

자료: 법무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033-300

나. 분석의견

법령경연 학술대회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법무부는 법령경연 학술대회 외부 심사위원 수당과 관련한 명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 사업은 2014년 하반기부터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제1회 대회 예선(2014.11.)과 본선(2015.1.)으로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추진한 사업으로, 법무부는 2014년의 경우 ‘법령개정 전문가 공동 학술대회’ 내역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였다.

국회의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당초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동 대회에 예산을 집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2016년 예산안부터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다.

법무부는 동 학술대회에 참석한 외부 심사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당 지급과 관련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년 지급액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²⁾에 의거하여 본 사업의 예산 범위에서 위원의 소속과 심사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에게는 100만원, 심사위원에게는 각각 차등을 두어 심사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심사위원들은 일년에 한 번 행사성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집행지침에서 명시한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기 어려우며, 예산액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수당을 증액 지급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한 수당 지급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8.1., p.151.

[2015~2018년 법령경연 학술대회 외부 심사위원 수당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일 시	수령자	금 액
제1회	2015. 1. 29.	윤○○ 외 9명	7,900
제2회	2016. 3. 2.	윤○○ 외 13명	9,100
제3회	2017. 3. 2.	지○○ 외 11명	6,800
제4회	2018. 2. 8.	송○○ 외 9명	8,800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법무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 대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³⁾

그러나 법무부는 2017년부터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양재동 호텔 등에서 개최하고 있으므로,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기획재정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8. 4., p.188.

[2014~2018년 법령경연 학술대회 예산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장 소	비 목	내 용	예산액	집행액
2014 (제1회 예산)	-	일반수용비 (210-01목)	자료 제작비	40	6.5
			외부 심사위원 수당 등		2.4
		합 계			40
2015 (제1회 본선)	정부과천청사 3·4동 지하회의실	일반수용비 (210-01목)	경연대회 상금	40	15.5
			심사 수당		5.9
			비품 및 소모품 등		6.9
		업무추진비 (240-01목)	간담회 비용	2	1.5
		임차료 (210-07목)	워크숍 장소 등 임차	6	0.4
합 계			48	30.2	
2016 (제2회)	정부과천청사 3·4동 지하회의실	일반수용비 (210-01목)	동영상 제작비	36	7
			법령경연 상금		12
			자료 인쇄비 등		13
			예산심사 및 심사수당 등		10
		상패대금	1.5		
		업무추진비 (240-01목)	간담회 비용	2	1.6
		임차료 (210-07목)	워크숍 장소 등 임차	6	1
합 계			44	46.1	
2017 (제3회)	양재동 더 케이 호텔	일반수용비 (210-01목)	상패대금	36	1.5
			본선 입상상금		12.0
			소모품, 포스터, 자료집 등		5.1
			영상제작비		6.8
			심사수당		5.4
			예산심사 비용		3.0
		업무추진비 (240-01목)	간담회 비용	2	0.1
		임차료 (210-07목)	법령경연 학술대회 임차료	6	4.8
합 계			44	38.7	
2018 (제4회)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	일반수용비 (210-01목)	심사수당 등	36	7.0
			책자 구입, 자료집 인쇄비 등		3.8
			상패대금		0.9
			본선 입상상금		15
		업무추진비 (240-01목)	간담회 비용	2	0
		임차료 (210-07목)	법령경연 학술대회 임차료	6	6
합 계			44	32.7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가. 현황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¹⁾ 사업은 상사 관계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 선진법제포럼 개최, 중재산업 활성화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7% 감소한 34억 5,900만원이다.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소관부처 변경(산업통상자원부 → 법무부)에 따라 2016년부터 법무부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30.9% 감소한 25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다. 감액분은 2018년 신규 개소한 서울중재센터 임대보증금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의 2019년도 예산안 미편성에 의한 것이다.

[2019년도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2,401	4,596	4,596	3,459	△1,137	△24.7
중재산업 활성화	1,401	3,682	3,682	2,544	△1,138	△30.9

자료: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은 삼성동 무역센터 건물(대한상사중재원 기존 입주)에 심리실, 국제중재인 및 외국중재기관 사무실, 통·번역 시설 등을 포함한 약 2,000m² 규모의 공간을 임차하여 2018년 1월부터 내부 공사 후 4월 20일에 '서울중재센터'를 개소하였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033-304

[2017~2019년 대한상사중재원 보조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2017 예산	2018 예산	2019 예산안
대한상사중재원 보조금	1,151	3,442	2,544
- 해외설명회	295	265	265
- 국제중재 행사	90	64	64
- 홍보컨텐츠 강화	100	136	136
- 국제중재 전문교육 강화	120	120	202
- 국제중재 유치 강화 및 해외관리인력(해외데스크 운영 ¹⁾ 등)	516	333	499
- 국내중재 설명회	30	114	198
- 서울중재센터 운영	0	2,410	1,178

주: 1) LA 1개소, 상하이 1개소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법무부는 서울중재센터의 5년 내 재정자립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므로, 향후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서울중재센터 운영 보조금과 관련하여 5년 내 재정자립을 목표로 교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서울중재센터가 조속히 재정자립을 달성하여 국가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²⁾

또한, 법무부가 지난 3년간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해외데스크 설치 등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말 기준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건수는 28건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

2)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2008년 설립)에 대해서도 향후 재정자립을 목표로 2011년부터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보 및 교육 사업은 그 특성상 효과가 단기에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실적만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향후 동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건수 및 사건규모, 재정자립도, 법률서비스 분야의 국제무역수지 추이³⁾ 등의 지표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료 축적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연도별 국제중재 건수 및 사건규모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6월말)
국제중재 건수 (A)	52	77	85	77	87	74	62	78	28
국제중재 사건규모(B)	822	2,678	7,739	1,698	2,504	2,758	2,114	4,663	539
1건당 사건규모(B/A)	16	35	91	22	29	37	34	60	29

자료: 법무부

둘째, 서울중재센터 운영 보조금 중 운영위원회 및 국제중재위원회 회의수당으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국제중재위원회 회의수당 근거 규정 마련이 지연되어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향후 집행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해당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설립 예정인 서울중재센터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건립·운영하는 대형 국제중재심리시설이므로,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시설 설계·운영 및 국제 홍보계획을 수립·점검하고자 연 12회 정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중재위원회는 기존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운영 중이던 국제중재 관련 위원회들을 통합 개편하여 국제중재사건 관련 자문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이며, 국제중재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재인 선정, 중재인 풀 구성, 중재사건 처리 프로세스 구축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할 중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연 8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3) 최근 5년(2013~2017년) 평균 법률서비스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는 약 6,687억원이다.

그런데 서울중재센터는 2018년 9월에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수당을 집행하기 시작하였고, 국제중재위원회는 2018년 9월 수당지급 근거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향후 회의수당을 집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와 국제중재위원회 회의수당의 향후 집행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19년 대한상사중재원 보조금 중 서울중재센터 운영 예산 세부 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임차료(27,245원*2,000m ² *12월)	653,885
관리비(19,072원*2,000m ² *12월)	457,710
운영비 - 운영위원회 및 국제중재위원회 회의수당(40,000) - 시설관리·운영비(26,000)	66,000
합계	1,177,595

주: 서울중재센터는 임차료, 관리비, 운영비 등은 법무부 보조금으로 총당하며, 인건비는 대한상사중재원 자체 예산으로 조달하여 집행하고 있음

자료: 법무부

[2018년 대한상사중재원 운영위원회 및 국제중재위원회 개최 실적]

구분	번호	개최일	회의 내용	참석위원 수
국제중재위원회	1	4. 17.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소개 및 국제중재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	위원 10인
	2	6. 12.	국제중재절차 진행 관련	위원 7인
	3	6. 20.	국제중재절차 진행 관련	위원 7인
	4	7. 17.	국제중재인 기피 관련	위원 4인
	5	8. 8.	국제중재인 기피 관련	위원 4인
운영위원회	1	9. 12.	심리시설 개선사항, 향후 위원회 진행 방식 및 일정 논의	위원 10인

자료: 법무부

가. 현황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¹⁾은 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그 비위를 예방하고, 마을변호사 제도 등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9.0% 감소한 9억 7,500만원이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민·상사 법학연구 지원’ 사업은 민·상사 법학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법학원²⁾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에 신규 반영되었다.³⁾ 2019년도 예산안에는 연구원(6명) 및 행정원 인력(1명)의 인건비성 경비 2억 9,208만원과 운영지원비 792만원 등 전년과 동일한 3억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민·상사 법학연구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1,089	2,378	2,378	975	△1,403	△59.0
민·상사법학연구 지원	300	300	300	300	0	0.0

자료: 법무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 1) 코드: 일반회계 1038-303
- 2) 한국법학원은 법률문화의 향상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1956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현재 부원장직은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법무부 차관 등이 맡고 있다. 법무부는 2007년 「한국법학원육성법」 제정에 따라 한국법학원에 대한 보조 근거를 마련하였다.
 - 소재지: 기존 서울중부등기소 내 소재하였으나, 민·상사 법학연구 지원 사업으로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받아 2016년 7월 서초동으로 이전
 - 구성(인원)
 - 이사회: 원장(1), 부원장(5), 상임이사(6), 이사(11), 감사(2)
 - 사무국: 사무국장(1), 직원(1)
 - 민·상사 법학연구(2016년 7월부터 운영): 박사 등 연구원(6), 행정지원(1)
- 3) 대법원 또한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코드명: 일반회계 1143-404)의 내역사업으로 한국법학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법무부와 동일하다.

[2019년 민·상사 법학연구 지원 사업 예산 세부편성내역]

(단위: 천원)

비 목	내 용		예산안
민간경상보조 (320-01목)	인건비	1) 연구팀 전문위원 5명×39,000,000원	195,000
		2) 연구팀 기타전문위원 1명×38,000,000원	38,000
		3) 행정지원 1명×26,600,000원	26,600
		4) 연금지급금 7명×1,545,700원	10,820
		5) 퇴직적립금 (5명×3,250,000원)+(1명×3,160,000원)+(1명×2,250,000)	21,660
	소 계		292,080
	운영지원	1) 포럼 개최(수당, 다과 등)	7,000
		2) 일반수용비	920
	소 계		7,920
	합 계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민·상사 법학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관련 주제에 대한 심도 깊고 연속성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철저한 연장평가를 통해 동사업의 실효성 및 한국법학원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으로 한국법제연구원(1990년 설립)이 있으나 대부분 공법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민·상사법 분야는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전문 연구기관이 부재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연구용역 절차에 따라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 현안 위주의 단편적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사업의 연속성 유지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법학원은 2016년 7월 민·상사 학술연구부를 설립한 이후 연구원 6명을 채용하여 4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물은 2017년 상반기에 제출하였다. 2017년 7월부터는 4개의 신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이 중 1개 과제에 대한 결과물은 2017년 12월에, 나머지 3개 과제에 대한 결과물은 2018년 4월에 제출하였다. 2018년 9월 기준 학술연구부는 2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하반기~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에 수행한 연구과제와 2018년 하반기부터 수행한 연구과제를 비교할 때, 법무부가 한국법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필요성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연구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모든 과제의 연구가 1년의 기간 안에 종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책연구비(260-02목)를 활용한 연구용역 공모 등을 통해 충분히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6~2018년 한국법학원 수행 연구주제]

구분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민법팀	공동주택인 집합건물에 관한 법적 규율의 통합방안 (2016.8.1.~2017.3.29.)	개정 민법(여행계약) 시행에 따른 여행표준약관의 개선방안 (2017.7.1.~2017.12.29.)	민법상 변동 이율제 도입 필요성 (2018.7.1.~)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 법제 정비 (2016.7.1.~2017.3.29.)	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개념 및 손 해액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2017.7.1.~2018.4.27.)	-
상법팀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2016.7.1.~2017.5.30.)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최근 논의 동향 (2017.7.1.~2018.4.5.)	상법 보험편 입법동향 (2018.7.1.~)
	자금조달활성화 방안 (2016.8.1.~2017.5.30.)	각종 소수 주주 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 (2017.7.1.~2018.4.27.)	-

자료: 법무부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민·상사 학술연구부로 하여금 법무실의 입법·정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① 연구과제 선정(중·장기적 과제 포함), ②

연구수행 과정의 관리, ③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등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4)에 따라 동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2019년 상반기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장평가를 실시하여 동 사업의 실효성 및 한국법학원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6

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률 개선 노력 필요

가. 현황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사업¹⁾은 전자공증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한 공증제도 활성화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및 공증인 직무교육 등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공증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8% 증가한 7억 1,400만원이다.

[2019년도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1,938	572	572	714	142	24.8
계약직 상용임금	59	67	67	103	36	53.7
공증제도운영 및 신뢰도 제고	111	133	133	133	0	0.0
공증시스템 운영	1,768	372	372	478	106	28.5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한 전자공증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010년 전자공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자문서파일을 공증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공증인법」상 공증인 면전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어 전자공증 이용 시에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법무부는 2017년 7~12월 웹캠, 스마트폰 등 인터넷 화상 장치를 통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시스템 개발을 포함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시행²⁾하였고, 화상공증의 근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038-300

2) 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위해 2017년 일반연구비(260-01목) 8억 1,000만원, 자산취득비(430-01목) 6억 7,500만원 등 총 14억 8,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거를 명시하는 「공증인법」 개정³⁾ 후 2018년 6월부터 화상공증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전자공증시스템 이용률을 보면 연간 전자공증 건수가 100~400건, 전자공증 이용률이 0.003~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법무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전자공증시스템 이용 부진은 홍보부족 등으로 전자공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은데 주원인이 있다.

따라서 향후 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에 대한 홍보 강화 및 편의성 제고 등 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5년간 전자공증(화상공증) 이용률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7.
공증건수	3,901,541	4,410,450	3,749,255	3,416,697	1,828,614
전자(화상)공증 건수	136	151	365	319	194
이용률	0.0035	0.0034	0.0097	0.0093	0.0106

자료: 법무부

3) 「공증인법」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②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이 그 앞(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제66조의12(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① 제66조의5에 따른 전자문서의 인증은 지정공증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12.]

가. 현황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사업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사회통합지원 사업¹⁾의 2017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를 통한 3자 통역 방식 또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의 직접 대면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원으로, 운영비 2,940만원과 마을변호사 사법통역교육비 6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도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0,682	11,610	11,610	12,326	716	6.2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19	30	30	30	0	0.0

자료: 법무부

[2019년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운영 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세목코드)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일반수용비 (210-01목)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운영비) 29.4백만원 (마을변호사 사법통역교육) 0.6백만원	30

자료: 법무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233-301

나. 분석의견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사업은 기존의 법률홈닥터 및 마을변호사 제도와 별도로 추진해야 할 차별성이나 당위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홈닥터 및 마을변호사 제도와와의 통합 등 정비가 필요하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사업은 언어장벽,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법률홈닥터²⁾ 및 마을변호사 사업³⁾과 서비스 대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서비스 제공 주체가 ‘국내 변호사’이며 서비스 내용이 기존 법률홈닥터 및 마을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는 특수한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세부사업에서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무료 법률상담제도에 통역 서비스만 추가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국적, 종교, 언어 및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외국어 능력, 관심국가, 타문화에 대한 이해(해외체류 경험 등)를 겸비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겪게 되는 민형사상의 일반적인 법률상담 외에도 국적취득,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국제결혼 특성에 따른 혼인신고 절차 및 이혼,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의 강제퇴거, 난민신청 등 출입국외국인정책과 밀접한 법률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법률상담을 수행하는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와는 차별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무부는 기존의 마을변호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는 반면,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는 전화를 통한 3자 통역 방식으로 실시간 상담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세부사업명: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코드명: 일반회계 1131-301 /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직접 고용한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 법률홈닥터 20명 배치로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2018년 10월 기준 총 65명의 법률홈닥터가 활동하고 있다.

3) 세부사업명: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코드명: 일반회계 1038-303 / 마을변호사 사업은 법무부 법무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를 매개로 전국 1,413개 모든 읍·면 및 86개 동에 변호사를 위촉(비상주)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2014년부터 예산안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대상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외국)의 법률적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체류 중 국내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서비스라는 점,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사업의 상담분야가 기존의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의 경우만 실시간 상담 방식을 채택할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외국어 능력이나 해외체류경험 등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필수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가진 기존의 법률홈닥터 및 마을변호사도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한 3자 통역시스템과 연계한다면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동 사업의 2017년 예산 3,000만원 중 1,872만원(62.4%)이 집행되었는데, 이 중 1,492만원은 홍보용 리플릿 제작에 사용되었으며 실질적인 대면상담에 소요된 금액은 38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2017년 대면상담 실적이 총 127건에 불과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8월 말 기준 대면상담 실적 또한 총 56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사업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비 목	예산편성내역		세부집행내역	
	내 용	금액	내 용	금액
일반수용비 (210-01목)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운영비 등	30,000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대면상담 실시	3,800
			홍보용 리플릿 제작	14,919
	합 계	30,000	-	18,719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7년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출입국관리사무소별 대면상담 실적]

(단위: 건)

계	서울	남부	부산	인천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127	15	14	6	4	13	9	17	13	4	9	4	0	5	3	7	4

자료: 법무부

[2018년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출입국관리사무소별 대면상담 실적]

(단위: 건)

계	서울	남부	부산	인천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56	5	0	2	3	4	7	11	2	5	0	2	5	0	1	9	0

자료: 법무부

한편, 2017~2018년(8월 말 기준)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한 상담실적은 각각 905건 및 680건인데, 이 중 3자 통역 방식으로 수행한 상담은 242건(26.7%), 126건(20.9%)으로 나타나 통역 수요가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사업을 기존 마을변호사 제도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한 상담실적]

(단위: 건)

법률상담			상담분야					계
일반 ¹⁾	3자통역 ²⁾	총계	가사	형사	민사	노동	기타	
663	242	905	175	153	448	123	6	905

주: 1) 변호사와 이용자의 양자 간 통화

2) 종합안내센터 직원, 변호사, 이용자의 3자간 통화

자료: 법무부

[2018년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한 상담실적(8월 기준)]

(단위: 건)

법률상담			상담분야					계
일반 ¹⁾	3자통역 ²⁾	총계	가사	형사	민사	노동	기타	
540	140	680	157	91	331	101		680

주: 1) 변호사와 이용자의 양자 간 통화

2) 종합안내센터 직원, 변호사, 이용자의 3자간 통화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이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사업은 기존에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해오던 법무실 또는 인권국이 아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추진해야 할 차별성이나 당위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활한 사업관리 측면에서 법률홈닥터 및 마을변호사 제도와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 현황

법무부는 외국인보호관리 사업¹⁾ 및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²⁾에서 일반수용비(210-01목) 및 국내여비(220-01목)로 각각 출입국소송 및 난민소송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2019년의 경우 출입국소송 예산은 8,000만원, 난민소송 예산은 1억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19년도 출입국소송·난민소송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외국인보호관리	10,561	12,487	12,487	14,474	1,987	15.9
출입국소송	80	67	67	80	13	19.4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0,682	11,610	11,610	12,326	716	6.2
난민소송	97	130	130	123	△7	△5.4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향후 출입국소송 및 난민소송 관련 예산 편성 시 소송건수 추이와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례적인 불용액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출입국소송 및 난민소송 건수를 보면,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출입국소송 건수 및 난민소송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난민소송 감소와 관련, 2017년 10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원고 승소(서울행정법원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233-300

2) 코드: 일반회계 1233-301

2017구단4294)³⁾한 후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강화⁴⁾하여, 2018년 1월부터 7월말까지 심사결정종료 건수가 1,71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9%(2,473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의신청도 감소⁵⁾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출입국소송의 경우 각 업무별 전반적인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어 그 원인을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5년간 출입국소송 및 난민소송 건수]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9월 기준)
출입국소송	632	592	636	730	403
난민소송	400	1,085	2,844	3,864	1,291

자료: 법무부

한편, 2015년 이후 출입국소송 및 난민소송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액이 과다 편성되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출입국소송의 경우 2015년 예산액 1억 1,600만원 중 4,560만원 집행(집행률 39.3%), 2016년 예산액 1억 1,941만원 중 5,956만원 집행(집행률 49.9%), 2017년 예산액 1억 1,941만원 중 7,970만원 집행(집행률 66.7%)되었으며, 난민소송의 경우 2015년 예산액 2억 316만원 중 1억 8,278만원 집행(집행률 89.9%), 2016년 예산액 2억 261만원 중 818만원 집행(집행률 4.0%), 2017년 예산액 2억 7,851만원 중 9,681만원이 집행(집행률 34.8%)되었다.

- 3) 난민면접조서에 난민신청자의 실제 진술과 달리 그 취지가 왜곡되어 기재되거나 주요 질문이 누락되는 등 난민면접 과정의 부실함으로 인해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었다.
- 4) 법무부는 난민면접조사 시 신청 시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심사관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심사보고서에 신청사유를 비교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면접 과정 중 녹음·녹화 의무화, 면접심사 관련 교육 강화, 난민전문통역인 재위촉·신규 위촉 등의 재정비를 실시하였다.
- 5) 현재 난민심사는 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1차 심사, ② 법무부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③ 법원 1심, ④ 법원 2심, ⑤ 법원3심의 5단계로 이루어지며,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2018년에도 6월 말 기준 출입국소송의 경우 예산액 6,736만원 중 4,726만원이 집행(집행률 70.2%)되었으나, 난민소송의 경우에는 예산액 1억 3,015만원 중 2,616만원이 집행(집행률 20.1%)되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된다.

[2015~2018년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6.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출입국 소송	116,048	45,600 (39.3)	70,448	119,408	59,557 (49.9)	59,851	119,408	79,698 (66.7)	39,710	67,360	47,256 (70.2)	20,104
난민 소송	203,163	182,778 (89.9)	20,385	202,609	8,176 (4.0)	194,433	278,509	96,809 (34.8)	181,700	130,150	26,160 (20.1)	103,990

자료: 법무부

기획재정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법률 자문비용 등 소송예산은 실소요를 감안하여 적정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불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출입국소송 및 난민소송 관련 예산 편성 시 소송건수 추이와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⁷⁾

6) 기획재정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8.4., p.180

7) 법무부는 난민신청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난민심사인력 확충을 위해 2019년 정시직제로 16명 증원이 반영된 상황에서, 최근 국민적 관심과 우려 등이 집중 조명되고 있는 난민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원활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2019년도 정부예산안 수준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가. 현황

건물대여료¹⁾는 은행 등 국가 외의 자의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건물 사용료 수입이다. 건물대여료 세입의 2018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3억 4,900만 원이다.

[2019년도 건물대여료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건물대여료	578	349	349	349	0	0.0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행정재산인 대검찰청과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 청사가 국유재산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허가가 필요²⁾하고,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³⁾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규정⁴⁾에서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51-512

2)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3)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⁵⁾ 「국유재산법」 제34조⁶⁾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⁷⁾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기부채납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재산인 대검찰청과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 청사와 관련하여, 민간단체인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및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⁸⁾가 범죄예방활동 및 보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 제28조를 근거로 검찰청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법률구조법」

제2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구조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아닌 법률구조법인에는 국유재산만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6)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①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법무부훈령)

제4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은 「법사랑위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연합회 산하 위원협의회 소속 법사랑위원의 호칭은 달리 정할 수 있다.

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검찰청과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 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⁹⁾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전국 52개청) 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 중에 있다.

[국유재산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현황]

민간단체 또는 법인명	사무실 위치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 여부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대검찰청	×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대검찰청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검찰청,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	×

자료: 법무부

제5조(직무) 법사랑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접촉선도, 원호선도 등 선도업무
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과 원호 및 재정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보조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및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 예방 활동
5. 소년·소녀가장 등 배려대상 청소년, 노인·장애인·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활동
6.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

제18조(조직 및 명칭)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지역에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로 한다.

제37조(조직 및 명칭) ① 전국적 규모의 범죄예방활동 전개와 지역연합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국연합회는 전국의 지역연합회로 구성한다.

③ 전국연합회의 명칭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로 한다.

9)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법무부는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등이 수행하는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의 공익적 업무 성격을 감안하여 검찰청사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은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¹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법무부는 국유재산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0)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가. 현황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사업¹⁾은 보이스피싱, 사행성게임장, 불법사금융 등 국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수사체계 구축 및 민생치안 확립을 통하여 안정된 서민생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36억 2,600만원이다.

법무부는 범죄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여 신속한 사건 실체 규명 및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2015년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사업 내에 ‘범죄신고자 보상금’을 신설하였다.

범죄신고자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피의자의 죄질, 재범우려,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중요사건의 피의자 검거공로자(검찰·경찰 공무원 등 법령상 신고의무자 제외)’이며, 법무부는 ① 범죄의 죄질과 중요도, ② 검거공로자 신고내용의 정확성, ③ 검거공로자가 직접 기여한 공로, ④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2019년도 범죄신고자 보상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13,018	13,354	13,354	13,626	272	2.0
범죄신고자 보상금	0	5	5	5	0	0.0

자료: 법무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731-404

나. 분석의견

범죄신고자 보상금은 설치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2015년 신설 이후 집행실적이 전무하므로 법적근거 및 집행실적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범죄신고자 보상금이 신설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2018년부터는 저조한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예산액을 500만원으로 감액하였으나, 2018년 9월 기준 집행률은 0%이다. 법무부는 2019년에도 범죄신고자 보상금 예산안으로 올해와 같은 500만원을 편성하는데, 2015년 신설 이후 집행실적이 전무한 보상금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법무부는 범죄신고자 보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보상금 소요가 없어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는 입장이다.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과거 집행실적 등을 감안 실제 집행가능한 적정소요를 반영하고,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포상금은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²⁾을 고려할 때, 법무부는 향후 범죄신고자 보상금의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 방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국민의 신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포상금·상금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하고, “훈령, 지침 등에 따라 지급하는 등 법령상 근거가 미약한 경우에는 법령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³⁾하고 있는데,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사업의 범죄신고자 보상금의 법적 근거로 법무부가 제시하는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 공로자 보상 규정」은 행정규칙인 대검찰청 훈령이므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무부는 범죄신고자 보상금의 지급근거를 행정규칙이 아닌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

2) 기획재정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8.4, p.216.

3)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7. 1, pp.192~193.

가. 현황

형사보상 사업¹⁾은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 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경비(무죄비용보상금)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도 형사보상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32억 1,300만원이다.

[2019년도 형사보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형사보상	36,039	33,213	33,213	33,213	0	0.0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국회가 반복하여 지적하는 형사보상 사업의 연례적인 예산 과소 편성 및 예비비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형사보상금 지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형사보상 사업 예산의 최근 5년간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이 매년 증액 편성되고 있으나 형사보상 집행 소요액이 당초 편성된 예산액보다 많아 부족분을 이·전용액 및 예비비²⁾로 충당하고 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337-302

2)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A)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B)	집행률(B/A)
2013	11,000	0	46,672	57,672	57,672	524.3
2014	14,000	0	74,185	88,185	88,166	629.8
2015	20,000	5,200	27,775	52,975	52,975	264.9
2016	25,000	940	5,829	31,769	31,769	127.1
2017	27,500	2,297	6,245	36,042	36,039	131.1
2018(8월말)	33,213	0	0	33,213	24,847	74.8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형사보상 예산이 매년 예산액보다 초과집행되는 이유에 대하여 2009년 구 「도로법」 제84조 과적차량에 대한 양벌규정 위헌결정으로 이미 벌금을 납부한 법인들이 재심을 신청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2006~2010년)에 따른 재심 무죄판결로 인해 형사보상 청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연례적인 예산의 과소 편성 및 예비비 사용 문제는 국회 결산심사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2019년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32억원으로, 최근 5년간(2013~2017년) 집행액의 평균인 533억원 및 2017년도 집행액 36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³⁾

더욱이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하고, 검찰의 형사보상금 지급기한을 3개월로 명시하며, 지급기한 내 보상금 미지급시 민사법정이율⁴⁾로 계산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8.2.28.)하여 공포·시행(2018.3.20.)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지연이자의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사보상금의 적기 집행을 위한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연례적인 예산의 과소 편성 및 예비비 사용 문제로 국회의 지적을 받았던 국가배상금 지급(일반회계 1031-301) 사업의 경우 예상배상액 및 지연이자 등을 고려하여 2019년도 예산안으로 전년과 동일한 2,000억원이 편성되었다.

4)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가. 현황

법무부는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및 지역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운영기본경비(총액)¹⁾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1% 증가한 51억 1,400만원으로, 이는 최저임금 보전분 등 사무보조원에 대한 처우개선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동 사업의 기타운영비(210-16목)는 2018년과 동일한 3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다. 기타운영비는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인 과 운영비, 비서실운영비, 시험관리비, 직원에 대한 축·조의금, 격려금 등으로 집행할 수 있는 현금성 경비²⁾이다.

[2019년도 보호관찰소운영기본경비(총액)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보호관찰소운영기본경비(총액)	4,298	4,601	4,601	5,114	513	11.1
기타운영비(210-16목)	517	382	382	382	0	0.0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보호관찰소 65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질에 맞도록 직제를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7018-209

2) 기획재정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7. 4., pp.197~198.

법무부 보호관찰소에는 비직제과가 65개 있는데, 이는 보호관찰소 소속 직원이 2010년 1,224명, 2015년 1,507명, 2018년 1,54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2010~2018년 사이 총 325명 증가)한 것에 비하여 직제상 과 단위 보조기구(2012년 4개, 2014년 3개, 2016년 2개, 2018년 1개 신설(총 10개 과 신설)된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보호관찰소의 경우 직제상 과인 관찰과 예하에 관찰과(4명), 소년 보호관찰과(8명), 성인 보호관찰과(7명) 등 기능을 분화하여 사실상 3개 과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직제상으로는 1개 과(관찰과)만 표시되고 있다.

법무부는 2015년부터 보호관찰소 비직제 과에 대한 과운영비를 편성해왔으나, 2019년도 예산안부터는 2018년도까지 비직제과 지원 과 운영비를 삭제하고 격려금을 6,228만원 증액(250.5%)하여 편성하였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조치가 비직제과의 직제 반영 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기타 운영비 총액이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격려금을 이용한 비직제과 지원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향후 집행과정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격려금의 월정액 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공식조직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법무부는 비직제과의 필요 소요를 엄격히 검토하고, 직제를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

[2018~2019년 보호관찰소 기타운영비 세부산출근거]

(단위: 천원)

내역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안	
	세부산출근거	금액	세부산출근거	금액
과운영비	가. 6명이상(88개 팀, 5개 심사위, 27개 지소, 2개 관제센터)	263,520	가. 20인 이상 35과*270,000원*12월=	113,400
	나. 6인 이상 80과*180,000원*12월=		172,800	
	다. 비직제과 지원 65개과*120,000원*12월=	93,600	다. 5인 이하 8과*90,000원*12월=	8,640
격려금 등	24,867,000원	24,867	87,147,000원	87,147
	소계	381,987	소계	381,987

자료: 법무부

3) 기존 직제과 30개 + 26개 과 신설(2007. 7.) + 23개 과 신설(2008. 1.) + 4개 과 신설(2012. 3.) + 3개 과 신설(2014. 9.) + 2개 과 신설(2016. 3.) + 1개 과 신설(2018. 3.) → 현재 직제상 88개 과 + 1개 센터(정보화)

가. 현황

법무부는 마약수사 사업¹⁾에서 국내·외 마약사범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마약수사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에 수사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마약수사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4% 감소한 45억 2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에서 외국 정부에 수사차량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9년도 마약수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마약수사	4,939	4,760	4,760	4,502	△258	△5.4

자료: 법무부

[2019년도 마약수사 사업 중 외국 수사장비 지원 예산 편성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사장비 지원내역	금액
마약수사 (1335-304)	아태지역마약조정 센터(APPIC) 운영 지원	1) 마약감식장비 1세트*45,000,000원	45,000
		2) 감시 및 채증장비 10대*2,500,000원	25,000
		3) 모바일 분석장비 1대*18,000,000원	18,000
		4) 기타 수사장비 8,556,000원	8,556
	소계		

주: 내역사업 중 수사장비 지원내역에 관한 금액만 표기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이병철 예산분석관(bclee@assembly.go.kr, 788-3745)

1) 코드: 일반회계 1335-304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두 개의 세부사업에서 외국 정부에 수사장비 및 수사차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개발국의 마약퇴치 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구입 및 지원’이라는 점에서 추진방식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형사협력지원 사업만 ODA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마약수사 사업을 ODA 사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마약수사 사업을 통해 마약통제능력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수사차량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제형사협력지원(ODA) 사업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수사장비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형사협력지원(ODA)²⁾ 사업은 아세안 국가에 대한 국제 마약퇴치 지원 사업, UNODC(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 과건 검사의 부담금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 감소한 7억 4,300만원이며, 이 중 외국 수사장비 지원 예산은 1억 8,200만원이다.

[2019년도 국제형사협력지원(ODA) 사업 중 외국 수사장비 지원 편성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사장비 지원내역	금액
국제형사 협력지원 (ODA) (1333-303)	국제 마약퇴치 지원 (캄보디아)	1) 마약감식장비(이온스캐너) 1대*\$52,000	58,760
		2) 수사지원차량 2대*\$41,250=\$82,500	93,225
		3) 컴퓨터 30대*\$660=\$19,800	22,374
		4) 마약진단시약 3,000개*\$2.2=\$6,600	7,458
		5) 계수조정 5,149,000원	5,149
	소계		181,817

주: 1. 내역사업 중 수사장비 지원내역에 관한 금액만 표기

2. 달러당 기준환율 1,100원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법무부는 마약수사 사업의 일환으로 저개발국에 장비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이는 아태지역마약정보조정센터(APICC)³⁾ 회원국 간 결속을 강화하고 수원국의 마

2) 코드: 일반회계 1333-303

3)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re for combating drug crimes)는 초국가 범죄인 마약류 범죄 대처에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아태 지역 회원국 간 마약류 범죄정보 공유대응을 목적으로 2012년 한국 검찰이 주도하여 창설한 아세안 국가 간 협력체로서 대검찰청 마약과에 사무국을 두고 회원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공조 수사 및 마약 퇴치 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약퇴치역량 향상을 통해 상호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저개발국에 대한 무상원조라는 점에서 국제형사협력지원 사업과 마약수사 사업 간 차이를 찾기 어렵다. 또한, ODA 사업은 국무조정실 주관 국가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부처 간 유사중복 여부 점검, 수원국 선정의 적정성 및 사업 효과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므로, 마약수사 사업의 무상원조 또한 ODA 사업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무부는 마약수사 사업을 ODA 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IOM이민정책연구원운영 사업¹⁾은 국가 간 이주 현상 분석 등 이민정책 방향을 연구하는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은 2009년 6월 한국과 국제이주기구(IOM)²⁾ 간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 체결(2009. 6. 30.)에 따라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로, 법무부와 경기도는 연구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4,700만원이 증가한 18억 6,400만원이다.

[2019년도 IOM이민정책연구원 운영 사업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IOM이민정책연구원 운영	1,295	1,417	1,417	1,864	447	31.6

자료: 법무부

[2019년도 IOM이민정책연구원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A)	2019년(B)	증감(B-A)	증감 내역
인건비	1,065	1,303	238	2018년 인력증원분 79, 2019년 인력증원분 159
운영비	310	377	67	일반수용비 23, 고용부담금 44
연구사업비	42	183	142	이민통계분석연구 142
합계	1,417	1,864	447	

자료: 법무부

이병철 예산분석관(bclee@assembly.go.kr, 788-3745)

1) 코드: 일반회계 1231-302

2) 1951년 설립된 유엔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이주 분야 정부 간 기구로 현재 172개국이 IOM의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나. 분석의견

정부 지원 예산의 증가와 인력 증원을 감안하여 연구원의 재정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체 수입 확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은 법무부의 보조금(IOM이민정책연구원운영 사업)과 경기도의 보조금,³⁾ 수탁연구과제 등의 자체수입으로, 연구원의 인건비, 운영비, 연구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다.

법무부의 보조금은 2014년 11억 7,300만원에서 2018년 14억 1,700만원으로 증가했고, 연구원의 자체수입은 2016년 8억 1,800만원까지 증가했으나 2017년 5억 600만원, 2018년 5억 1,200만원으로 감소했다.

[IOM이민정책연구원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A)	2018년(B)	증감(B-A)	
수입액	법무부 보조금	1,173	1,215	1,179	1,295	1,417	122
	자체수입	112	636	818	506	458	△48
	합계	1,285	1,851	1,997	1,801	1,875	74
지출액	인건비	737	1,036	996	1,149	1,263	114
	운영비	278	143	159	196	174	△22
	연구사업비	270	672	842	456	438	△18
	합계	1,285	1,851	1,997	1,801	1,875	△74

주: 2014~2017년은 결산기준, 2018년은 예산기준임

자료: IOM이민정책연구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자체수입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실질적인 연구사업을 통한 자체수입은 2015년 6억 2,528만원에서 2016년 7억 4,417만원, 2017년 4

3) 「법무부·경기도·국제이주기구 간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2007.11.) 이후 연구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연구원 사무실 임차비에 대해 보조금을 직접 집행하고 있어 기관 회계 상에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경기도 보조금은 2014년 4억 2,700만원에서 2018년 3억 1,600만원으로 감소했다.

[IOM이민정책연구원 경기도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경기도 보조금	427	429	414	316	316

자료: IOM이민정책연구원

억 5,225만원으로 감소하여, 자체수입액 중 연구사업 비중도 2015년 98.3%에서 2016년 91.0%, 2017년 89.4%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IOM이민정책연구원 연도별 자체수입액 현황]

(단위: 천원, %, %p)

구분	2015년 결산(A)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B)	증감(B-A)
연구사업비(a)	625,282	744,170	452,245	△173,037
법정기부금	1,000	63,899	10,304	9,304
발전기금	10,000	10,000	10,000	0
기타	0	0	33,425	33,425
합계(b)	636,282	818,069	505,974	△130,308
비중(a/b)	98.3	91.0	89.4	△8.9

자료: IOM이민정책연구원

앞서 살펴봤듯이, 연구원의 2019년도 정부 지원 예산안 규모가 전년대비 4억 4,7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신규 인력증원 및 기존 인력의 인건비 증액분이 2억 3,8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설립 이후 직원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 지원 예산도 점차 증가되고 있지만 연구원의 자체 수입액은 감소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연구원의 연차별 연구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실적인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연구총서의 발간건수가 2015년 16건, 2016년 14건, 2017년에는 8건으로 감소추세이다. 2018년에는 종료예정인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연구총서를 포함하면 15건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으로 인력이 증원된 것을 감안하면 연구실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4)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직원은 2014년 14명에서 2018년 20명으로 증가했다.

[IOM이민정책연구원 연도별 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임원	2	2	1	2	2
전문직	6	7	7	7	9
행정직	5	7	7	7	8
공무직	1	1	0	1	2
합계	14	17	15	17	20

주: 현원기준

자료: IOM이민정책연구원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실적 현황]

(단위: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기준	진행 중	소계
연구보고서	5	10	8	5	0	7	7
정책보고서	0	6	7	2	1	6	7
연구총서	1	0	0	1	0	1	1
워킹페이퍼	14	8	1	2	0	0	0
이슈브리프	6	16	9	17	3	9	12
통계브리프	0	1	0	0	0	0	0
동향자료집	2	0	0	0	0	0	0
전문매거진	1	1	1	1	0	1	1
연차보고서	0	0	1	2	0	2	2
합계	29	42	26	30	4	26	30

주: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확정·진행중인 연구사업

자료: IOM이민정책연구원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IOM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 확대와 인력 증원에 비하여 연구원의 연구실적 창출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IOM이민정책연구원은 기관운영의 재정안정성을 도모하고 연구실적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연구수입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

1 현황

법제처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세입예산안은 계상되지 않았고, 세출예산안(총계 기준)은 2018년 대비 33억 5,000만원(10.1%) 증액된 366억 800만원이며, 총지출은 세출예산안과 동일하다.

[2019년도 법제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1,854	33,258	33,258	36,608	3,350	10.1

주: 총계 기준

자료: 법제처

2019년도 법제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철도협력, 산림협력 등과 관련한 후속회담이 진행되는 등 남북교류협력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법제업무 총괄기관으로서 각 부처의 법령정비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법제적 기반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고, ②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어려운 법령용어를 부처 입안 시 자문, 부처협의안 검토 및 법령심사를 통해 사전 차단하고 이미 법령화된 것은 현행 법령을 전수 조사 및 검토하여 사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2019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에서 자문단을 구성하여 각 부처의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받아 반영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을 2019년 신규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기존에 법제 관련 의견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구성된 국민법제관 제도와 연계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재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성 예정인 자문단을 세대별 대표성을 확보하여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남북법제 사업의 경우 다른 부처의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일부·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통일법제추진위원회를 운영 중 이지만,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남북법제 사업과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는 사업을 2019년 예산안에 편성하였는바 부처 간 협조를 통해 사업 간 차별성이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3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법제처의 2019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법제정비 사업 등이 있다.

①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의 심화에 따라 각 부처의 법령정비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의 법제적 기반을 수립하기 위해 남북법제 사업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고, ② 법제정비 사업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사전 차단 및 사후 정비하기 위한 알기 쉬운 법제구축 내역사업 예산이 증액되었다.

[법제처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8 ¹⁾		2019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개)	세계법제정보서비스	580	580	787	207	35.7
	법제정비	835	835	2,209	1,374	164.6

주: 1) 주요 증액사업은 2018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법제처

1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의 문제점

가. 현황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은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용어,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제정비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14억 500만원이 증액된 15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법제정비	1,170	835	835	2,209	1,374	164.6
알기 쉬운 법제 구축	209	183	183	1,588	1,405	767.8

자료: 법제처

법제처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에 걸쳐 4,400여 건의 현행 법령에 대하여 용어를 중심으로 사후 정비를 진행하고, 법령안 입안 과정에서 사전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용어 사후 정비를 위한 지원 연구인력 10명의 인건비(상용임금, 110-03목) 3억 1,431만원, 용어 정비 관련 위원회 운영비, 전문가 자문료 등(일반수용비, 210-01목) 3억 727만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입안 과정 사전심사 강화를 위해 입법예고안을 학생 시각에서 검토하고 그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이하 ‘법령안 새로 쓰기’라 한다) 제도를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032-301

신설함에 따라 관련 용역비(일반용역비, 210-14목) 3억 5,353만원이 신규로 증액편성 되었다.

나. 분석의견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제도의 경우 기존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 입법 관련 회의 운영 사업과 연계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령안 새로 쓰기는 2019년부터 신규로 시행하는 제도로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단으로 하여금 입법예고 기간에 입법예고안을 배부하고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아 이를 법령안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나 표현으로 법령안을 사전 정비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제처는 연간 약 2,000여 건의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안당 30건, 총 60,000건 가량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선발된 학생이 주 1회 가량 의견을 제출할 경우 연간 50~60건 제출이 가능한 바 이에 따라 1,000명의 학생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선발된 자문단을 그룹화하여 학생이 관심 분야로 선택한 부처의 입법예고안을 메일로 송부하고, 메일·문자·상용메신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1,000명의 자문단에 대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2019년 예산으로 일반용역비 3억 5,35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동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법제처는 같은 법제정비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법령정비사업에서 국민법제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법제관 제도는 분야별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3개 분야(행정·경제·사회분야)에 188명(2018년 9월 기준)의 국민법제관을 구성하여 입법예고안, 법령개정안 등 법제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이다. 국민법제관은 온라인 회의 및 설문조사 참여, 국민참여심사 자문 등 다양한 참여를 통해 법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법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국민법제관 사업과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의 비교]

구분	국민법제관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목적	정부입법과정에 국민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및 소통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하여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그 의견을 법령에 반영
자문단 대상 인원	분야별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문단 인원	3개 분야 188명	1,000명
의견 수렴 대상	입법예고안, 법령개정안, 법령 개선제안 등	입법예고안
의견 수렴 내용	현장·실무 경험과 전문성에 기초한 법제 개선 사항	법령용어 및 문장의 순화·정비
의견 수렴 방식	온라인 회의 및 설문조사, 간담회 및 워크숍, 국민참여심사 등 자문	메일, 문자, 상용메신저 등 국민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상정
2019년 예산액	3,000만원 ¹⁾	3억,5400만원

주: 1)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예산 총액으로 이 중 일부 예산이 국민법제관 사업에 집행
 자료: 법제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두 사업의 경우 사업의 세부적인 목적, 대상 및 절차 등이 상이하지만 국민의 의견을 자문단을 두어 법제에 반영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과정에서 국민법제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두 사업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언어 습관은 어휘의 사용 등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세대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만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의 전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자문단을 각 세대별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온라인 홍보 플랫폼 ‘여기로(Here-Law)’의 운영 활성화 필요

가. 현황

법제처는 온라인 매체 등 과급력 있는 매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및 주요 법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법령정보제공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법제정책 알리기 사업을 매년 편성하고 있다. 법제정책 알리기 사업의 2019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900만원 증액된 7억 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법제정책 알리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법령정보제공	1,405	1,437	1,437	1,576	139	9.7
법제정책 알리기	631	634	634	703	69	10.9

자료: 법제처

나. 분석의견

법제처는 2017년 신설한 온라인 홍보 플랫폼 ‘여기로(Here-Law)’의 경우 방문자 수 측면에서 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는 법제정책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5월 온라인 홍보 플랫폼인 ‘여기로’를 신설하였다. 여기로는 법제처의 최신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한 곳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홍보 창구를 표방하고 있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031-300

[온라인 홍보 플랫폼 '여기로' 웹페이지]



자료: 법제처

2017년에 동 플랫폼의 개설 및 운영비로 3,500만원 편성되어 집행되었고, 2018년에는 운영비로 약 300만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2019년의 경우 기능개선 등에 따라 운영비를 포함하여 2,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다.²⁾ 또한, 2017년의 경우 홍보비로 7,000만원이 별도 집행되어 결과적으로 여기로 사업을 위해 총 1억 5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18년에도 홍보비가 별도 집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홍보 플랫폼 '여기로'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주요 내역	비고
2017년	105	플랫폼 개설 및 운영비(35) 홍보비(70)	-
2018년	3	운영비	홍보비 별도 집행
2019년	20	플랫폼 기능개선 및 운영비	-

자료: 법제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여기로는 내역사업인 '온라인 홍보 위탁 용역 사업'의 일부에 포함하여 추진 중이며, 위탁사업비는 여기로, 페이스북 등 법제처 SNS 운영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에 사용되고 있어, 여기로 운영만을 위해 집행된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

그런데, 여기로의 성과로 볼 수 있는 방문자 수 추이를 보면 여기로가 신설된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월별 방문자수가 1,227명부터 29,908명까지 상이하고 방문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아닌 월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방문자 수가 증가했던 4월, 5월, 7월은 여기로에 대한 별도의 홍보³⁾를 진행한 기간이었고, 홍보가 진행되지 않았던 2018년 6월의 경우 방문자 수가 초창기 여기로 개설시 방문자 수(2017년 5월 1,567명)와 유사한 1,719명에 그치고 있다.

[온라인 홍보 플랫폼 '여기로' 월별 방문자 수]

(단위: 명)

2017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67	6,071	9,169	1,711	1,378	1,354	4,521	15,933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227	630	1,643	12,791	29,908	1,719	29,464	

자료: 법제처

아울러 개설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제처의 주요 대국민 웹 사이트의 월평균 방문자 수와 비교해서 그 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3) 법제처는 4. 13. ~ 20. / 5. 24. ~ 31. / 7. 17. ~ 24. 기간 동안 SNS를 통한 국민참여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법제처의 주요 웹사이트 현황 및 월평균 방문자 수]

웹사이트명	주요 기능	2017년 월평균 방문자 수
여기로(herelaw) (www.moleg.go.kr/herelaw)	최신의 법제처 정책 및 주요 법령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홍보 플랫폼	약 6,000명
세계법제정보센터 (www.world.moleg.go.kr)	우리 국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법령, 연구보고서, 입법동향 등을 수집·가공하여 제공	약 58,100명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법령정보를 국민의 실생활 분야별로 통합·재분류하여, 어렵고 난해한 법령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	800,941명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	8,956,729명
대표 홈페이지 (www.moleg.go.kr)	법제처 뉴스·보도자료, 법령·해석 정보 제공 및 각종 업무 공개 자료 제공	1,465,156명

자료: 법제처

결과적으로 대국민 홍보플랫폼인 여기로의 경우 별도의 홍보를 진행하지 않은 기간에는 방문자 수 개선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여기로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법령정보 콘텐츠 제공, 여기로의 콘텐츠 구성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여기로 방문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남북법제 사업은 통일에 대비하여 분야별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9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600만원이 증액된 3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남북법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세계법제정보서비스	546	580	580	787	207	35.7
남북법제	152	136	136	342	206	151.5

자료: 법제처

나. 분석의견

법제처는 남북법제 사업 추진 시 다른 기관의 통일 법제 관련 사업과 유사·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정부공유 및 협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는 기존 남북법제 사업을 통해 남북한 주요 통합 방안 연구, 남북법제 세미나, 체제전환국 및 통일관련 법제사례 연구를 위한 국외출장,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2019년부터는 남북한 법체계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관계 부처의 입법정책 수립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북법제 조사연구 강화, 통일 대비 법령정비 협의회 운영 등의 사업에 총 3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031-301

증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 해외사례의 체계적 조사를 위한 남북법제 전문연구위원 2명의 인건비 7,700만원, 각 부처의 통일 대비 법령 정비 협업을 위한 협의회와 법령정비 담당자 세미나를 위한 2,800만원, 대한민국 법제 100년사 연구를 위한 1억원이 신규로 증액 편성되었다.

[남북법제 관련 주요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안)
남북한 주요 법령 통합 방안 연구	80	80
남북법제 세미나	10	10
체제전환국 및 통일관련 법제사례 연구를 위한 국외출장	7.6	7.6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26	26
통일법제 연구보고서 발간	7	7
남북법제 조사연구(전문연구원)	-	77
통일 대비 법령정비 협의회	-	22
중앙행정기관 법령정비 담당자 세미나	-	6
대한민국 법제 100년사 연구	-	100

자료: 법제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독립기관과 통일부, 법무부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 남북법제 사업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방식 역시 통일법제 관련 연구, 통일 법제 등 관련 세미나 및 학술회의 개최, 체제전환국 등의 법제사례 연구를 위한 국외출장 등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

[타 기관의 남북법제 관련 주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명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년 예산안	사업내용
대법원	사법정책연구개선 - 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관련 법적문제 연구	130	- 통일시 남북한 사법제도와 사법조직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기 위한 특 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개최 - 남북교류 및 통일 대비 법적 문제 연구 - 통일 심포지엄 개최
헌법 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 통일헌법관련 세미나 개최	8	- 통일헌법 관련 학술 세미나 개최
통일부	통일정책추진 -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	206	- 통일법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 통일법제 구축 자문회의 운영 - 남북 법제통합 학술회의 개최 - 통일법제 관련 해외 사례조사
법무부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504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운영 - 통일법제 자료수집 및 발간 - 북한이탈주민 법치주의 적응 지원 및 통일대비 관계부처협의회 등 운영 - 통일법제관련 연구용역 등
한국 법제 연구원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	249	- 분단국 통일과정 및 체제전환국의 법제 연구 - 북한법령 및 연구자료에 관한 체계적인 DB 구축 - 북한법제 및 통일대비법제에 관한 연구와 지원

자료: 각 기관 사업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법제처는 2014년부터 법무부 및 통일부와 ‘남북법제 연구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통일 DB의 구축·운영, 공동세미나 개최 등 남북법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법제처 1인, 법무부 1인, 통일부 2인 등 정부위원 4인과 외부 전문가 14인 등 총 16인으로 구성된 남북법제 관련 부처간 협의체인 ‘통일법제 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8년 통일법제추진위원회 개요]

구 성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위원(4명):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 정책기획과장,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 ■ 민간위원(14명): 외부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용역 주제 검토(1분기) ■ 현안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2~3분기) ■ 통일법제 사업성과 공유 및 평가(4분기)

자료: 통일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법제처는 남북법제 세미나를 법무부, 통일부와 공동개최(2017년 12월)하였고 2018년에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10월)하였으며, 법무부, 통일부와 공동세미나를 개최(12월 예정)할 예정으로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참여 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같은 동 위원회의 참석기관이 아닌 기관의 경우 업무 협조 및 조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두 기관의 2019년 예산안을 보면 각각 통일 심포지엄 및 통일 헌법 관련 학술세미나를 2019년 예산안에 편성 및 개최할 예정으로, 법제처가 다른 기관과 공동개최하는 통일 법제와 관련된 세미나의 주제나 세부내용과 유사·중복 우려가 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남북법제 관련 사업의 연구주제 선정, 학술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범정부적인 정보 공유 및 협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

1 현황

감사원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감사원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4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00만원 (6.0%) 증가하였다.

[2019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31	448	448	475	27	6.0

주: 총계 기준

자료: 감사원

감사원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1,328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9,200만원(2.5%) 증가하였다.

[2019년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20,936	129,690	129,690	132,882	3,192	2.5

주: 총계 기준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국가기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사무와 공무원 직무 감찰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2019년도 예산안은 ① 정부의 재정운용 목표에 적극 동참하여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되, 절감재원은 신규사업을 위한 소요 재원으로 활용하고, ② 감사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감사활동 관련 경비를 삭감하되, 근무환경 및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는 적절히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2019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감사권익보호관의 소명자료 검토 수행실적은 계획 대비 저조하므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2019년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사업이 있다.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사업에는 감사교육원의 제2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울타리 설치 공사,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및 LED 설치 공사 비용 등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13억 7,900만원(135.1%) 증액되었다.

[감사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8		2019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021	1,021	2,400	1,379	135.1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8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감사원

II

개별 사업 분석

1

감사권익보호관 제도 활성화 필요

가. 현황

감사권익보호관 운영 사업은 감사권익보호관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사활동경비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 감사권익보호관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감사활동경비	21,929	22,998	22,998	21,847	△1,151	△5.0
감사권익보호관 운영	0	108	108	108	0	0.0

자료: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는 감사의 이해관계자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적극행정면책²⁾을 신청하거나 이견을 제출하는 경우 소명인의 입장에서 소명자료를 검토·지원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감사원은 2015년 9월 1일 동 제도를 시범도입하면서 정부법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를 감사권익보호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해왔으며, 2018년부터 감사권익보호관 운영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소명자료 검토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131-303

2) 적극행정면책 제도는 공무원 등이 규제개혁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로서, 「감사원법」 제34조의3에 근거하고 있다.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나. 분석의견

과거 감사권익보호관의 소명자료 검토 수행실적은 계획 대비 저조하므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2019년도 감사권익보호관 자문료 예산안을 2018년과 동일한 1억 800만원으로 편성하면서, 자문료 단가를 건당 30만원으로 보고, 연간 360건의 자문이 실시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그러나 2017년 감사권익보호관 자문실적은 140건이며, 2018년 자문실적은 9월 현재 기준 59건으로, 예산 대비 자문실적은 저조하다.

[연도별 감사권익보호관 소명자료 검토 실적]

(단위: 건)

2015. 9. ~ 12.	2016	2017	2018. 1. ~ 9.	계
51	150	140	59	400

자료: 감사원

또한 2018년도의 자문료 집행액도 예산액 1억 800만원 대비 절반 수준만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초 2명의 감사권익보호관의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실제 자문실적이 예상에 비해 저조함에 따라 현재 1명의 감사권익보호관만 지정·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도 감사권익보호관 자문료 집행 실적]

(단위: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36,000

자료: 감사원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적극행정면책 활성화를 위해 감사를 수행한 부서와 별개로 적극행정면책 제도 전반을 전담하는 “적극행정지원단”을 신설(2018. 2.)하는 등 감사권익보호를 위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행정면책 제도는 감사권익보호관 운영에 일부 관련되어 있을 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18년 9월 현재까지의 실적은 예상건수 (360건)의 1/6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감사업무 수행 시 피감기관에 감사권익보호관 제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안내하는 등 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수행된 감사권익보호관 제도 운영 실적을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2019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 및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2019년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은 9,875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88억 800만원(△7.4%)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6,079억 2,800만원, 등기특별회계 3,146억 7,400만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649억 6,800만원이다.

[2019년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709,732	1,013,976	1,013,976	922,602	△91,374	△9.0
- 일반회계	426,533	649,702	649,702	607,928	△41,774	△6.4
- 등기특별회계	283,199	364,274	364,274	314,674	△49,600	△13.6
기 금	48,440	52,402	52,402	64,968	12,566	24.0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48,440	52,402	52,402	64,968	12,566	24.0
합 계	758,172	1,066,378	1,066,378	987,570	△78,808	△7.4

주: 총수입 기준
자료: 대법원

2019년도 대법원 소관 총지출은 1조 9,122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78억 8,700만원(4.8%)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 6,289억 3,700만원, 등기특별회계 2,304억 6,100만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528억 3,800만원이다.

[2019년도 대법원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676,390	1,775,952	1,775,952	1,859,398	83,446	4.7
- 일반회계	1,472,012	1,552,424	1,552,424	1,628,937	76,513	4.9
- 등기특별회계	204,378	223,528	223,528	230,461	6,933	3.1
기 금	44,357	48,397	48,397	52,838	4,441	9.2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44,357	48,397	48,397	52,838	4,441	9.2
합 계	1,720,747	1,824,349	1,824,349	1,912,236	87,887	4.8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대법원

나. 세입·세출

2019년도 대법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9,226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3억 7,400만원(△9.0%) 감소하였다. 일반회계는 2018년 6,497억 200만원에서 2019년 6,079억 2,800만원으로 △6.4% 감소하였으며, 등기특별회계는 2018년 3,642억 7,400만원에서 3,146억 7,400만원으로 △13.6% 감소하였다.

[2019년도 대법원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26,533	649,702	649,702	607,928	△41,774	△6.4
등기특별회계	283,199	364,274	364,274	314,674	△49,600	△13.6
합 계	709,732	1,013,976	1,013,976	922,602	△91,374	△9.0

주: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2019년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1조 9,436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9억 1,300만원(1.4%)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8년 1조 5,524억 2,400만원에서 2019년 1조 6,289억 3,700만원으로 4.9% 증가하였으며, 등기특별회계는 2018년 3,642억 7,400만원에서 2019년 3,146억 7,400만원으로 △13.6% 감소하였다.

[2019년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472,012	1,552,424	1,552,424	1,628,937	76,513	4.9
등기특별회계	257,322	364,274	364,274	314,674	△49,600	△13.6
합 계	1,729,334	1,916,698	1,916,698	1,943,611	26,913	1.4

주: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다.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대법원 소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수입계획안은 745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2억 3,100만원(27.8%) 증가하였다.

[2019년도 대법원 기금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사법서비스진흥기금	54,479	58,336	58,336	74,567	16,231	27.8

주: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2019년도 대법원 소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지출계획안은 745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2억 3,100만원(27.8%) 증가하였다.

[2019년도 대법원 기금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사법서비스진흥기금	54,479	58,336	58,336	74,567	16,231	27.8

주: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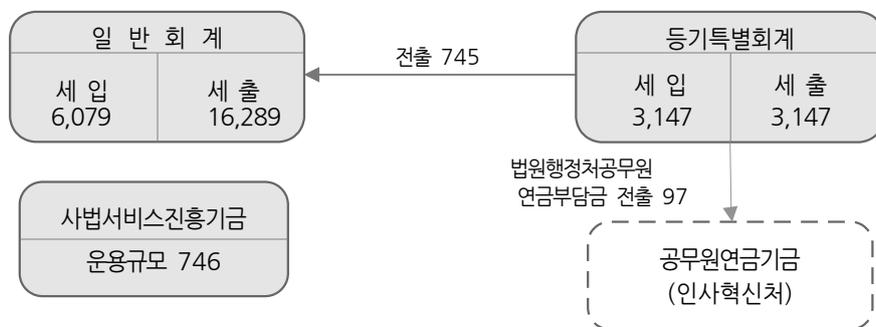
라. 재정구조

2019년도 대법원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거래로서 등기특별회계 여유자금 74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며, 회계·기금간 거래로서 등기특별회계는 등기소직원의 연금부담금 97억원을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전출한다.

[2019년도 대법원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2019년도 대법원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신증축법원 비품 구입 및 이전비 등 예산이 확대되었고(2018년 84억원 → 2019년 130억원), ② 송달료 등 경상경비 예산이 실제 소요에 따라 현실화되었으며(2018년 240억원 → 2019년 278억원), ③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가 반영되었다(2018년 37억원 → 2019년 56억원).

2019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대법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연례적으로 과다편성되고 있으므로 결산액을 기준으로 세입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인건비, 도서관인건비, 연수원인건비, 교육원인건비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대법원 소관 인건비 중 일부는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실제 소요를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설관리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 근로자 관련 예산은 분리계상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외국어발급시스템 구축 사업은 현재 구체적인 구축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2019년도 대법원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본부운영지원, 등기빅데이터시스템구축 사업 2개이다. 본부운영지원 사업은 대법원 및 각급법원, 신·증축청사의 공공요금, 청소·시설관리 무기계약직 및 용역비 등 청사관리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6억원 증가하였고, 등기빅데이터시스템구축 사업은 국가기관의 정형·비정형 등기정보 요청에 적시 대응하고, 국민의 기대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유형·방식의 등기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등기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이용을 증진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5.5% 증가하였다.

[대법원 2019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8		2019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본부운영지원	68,396	68,396	78,966	10,570	15.5
등기특별회계	등기빅데이터시스템구축	3,460	3,460	6,071	2,611	75.5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8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대법원

1 일반회계 적정 세입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2019년 대법원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총 6,079억 2,800만원으로 2018년 대비 417억 7,400만원 감액되었다.

[2019년 대법원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명	2017 결산	2018 예산(A)	2019 예산안(B)	증감	
				(B)-(A)	%
일반회계	426,532	649,702	607,928	△41,774	△6.4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대법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연례적으로 과다편성되고 있으므로 결산액을 기준으로 세입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9년 대법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일부 감액되었으나, 여전히 실제 수납액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도별 대법원 세입예산 수납률을 살펴보면 80% 미만으로, 해마다 1,500억원 내외의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대법원 세입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A)	574,650	600,920	574,815	575,030	649,702	607,928
수납액(B)	422,683	474,329	418,538	426,533	254,543	-
(A)-(B)	151,967	126,591	156,277	148,497	395,159	-
수납률	73.6	78.9	72.8	74.2	39.2	-

주: 2018년 수납액은 6월 기준
자료: 대법원

이를 세입과목별로 살펴보면, 2019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기타특별회계 전입금(91-912) 등 3개 세입과목의 예산안은 6,040억 5,100만원으로 2019년 대법원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약 99.4%를 차지한다.

[2019년 대법원 주요 세입과목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세입과목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안 (B)	증감 (B)-(A)
면허료 및 수수료	278,193	384,140	391,423	7,283
기타경상이전수입	104,898	138,144	138,144	0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39,671	123,640	74,484	△49,156
계	422,762	645,924	604,051	△41,873

자료: 대법원

우선 면허료 및 수수료의 경우, 최근 5년간 세입예산 대비 수납률은 약 70~80%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연도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결산액은 큰 편차가 없는 데에 반해 세입예산액은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큰 편이다. 또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이는 거의 없는 반면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볼 때, 세입예산 규모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세입예산 편성 시에 수납액을 기준으로 세입규모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세입예산(A)	징수결정액	수납액(B)	수납률(B-A)
2014	420,655	296,903	296,903	70.6
2015	420,660	291,095	291,095	69.2
2016	350,000	274,302	274,302	78.4
2017	338,900	278,193	278,193	82.1
2018. 6.	384,140	133,129	133,129	34.7
2019	391,423	-	-	-

자료: 대법원

이와 같은 세입예산 과다편성은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이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액은 약 1,000억원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2018년에는 약 1,200억원이 수납¹⁾되었으나, 예산안 대비 87.3%로 여전히 예산액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세입예산(A)	징수결정액	수납액(B)	수납률(B/A)
2014	84,483	87,338	87,338	103.4
2015	98,510	100,962	100,916	102.4
2016	118,705	101,365	101,168	85.2
2017	138,114	105,078	104,898	75.9
2018. 6.	138,114	120,741	120,563	87.3
2019	138,144	-	-	-

자료: 대법원

마지막으로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은 대법원 소관인 등기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2015년을 제외한 전반적인 수납률이 저조하다.

1) 대법원 소관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기한이 도과한 공탁금, 법원보관금 등의 국고귀속분이 재원이며, 2018년 수납액은 이미 상반기에 발생한 1,200억원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세입예산(A)	징수결정액	수납액(B)	수납률(B/A)
2014	67,932	35,000	35,000	51.5
2015	78,510	78,510	78,510	100.0
2016	102,518	40,000	40,000	39.1
2017	94,303	39,671	39,671	42.1
2018. 6.	123,640	0	0	0
2019	74,484	-	-	-

자료: 대법원

이와 같이 대법원의 주요 세입과목은 연례적으로 수납액보다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수납액을 기준으로 일관적인 산출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세입규모가 가장 큰 면허료 및 수수료의 연도별 산출근거는 매년 달라지는 한편,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 예산액은 이미 과다편성된 수치이므로, 예산액이 아닌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일관적인 산출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면허료 및 수수료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연도	세입예산	산출근거
2017	338,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예산액) × (2012~15년 결산 연평균 증가율) = (350,000백만원) × (△1.02) ≒ 338,900백만원
2018	384,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예산액) × (인지수수료 인상효과 기대치) = (338,900백만원) × (1.13) ≒ 384,140백만원
2019	391,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예산액) × (2017년 사건 증가율) = (384,140백만원) × (1.02) ≒ 391,423백만원

자료: 대법원

2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예산의 문제점

2019년 대법원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일반인건비, 도서관인건비, 연수원인건비, 교육원인건비 등 4개 세부사업¹⁾에 총 1조 1,349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5.7% 증액되었다.

[2019년도 대법원 인건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인건비	995,216	1,048,712	1,048,712	1,112,058	63,346	6.0
도서관인건비	4,585	4,989	4,989	5,027	38	0.8
연수원인건비	15,680	15,244	15,244	12,349	△2,895	△19.0
교육원인건비	4,628	5,227	5,227	5,474	247	4.7
계	1,020,109	1,074,172	1,074,172	1,134,908	60,736	5.7

자료: 대법원

일반인건비 사업은 전국 법원에 근무하는 법관과 법원직 공무원 등에 지급되며, 도서관, 연수원, 교육원 인건비는 각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법관 및 법원직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보수이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 일반인건비(일반회계 7001-151), 도서관인건비(일반회계 7002-171), 연수원인건비(일반회계 7002-181), 교육원인건비(일반회계 7002-191)

2-1. 일반인건비 내 증원인력 인건비 조정 필요

가. 현황

일반인건비는 각급 법원에 근무하는 법관 및 일반직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 2019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33억 4,600만원 증액된 1조 1,120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일반인건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인건비	995,216	1,048,712	1,048,712	1,112,058	63,346	6.0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인력 증원계획에 따라 증액된 인건비 일부는 임용시기를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일반인건비 증액분은 총 633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액되었는데, 이 중 159억 6,000만원은 직제 개정 등으로 인한 인력 증원에 따른 것이다.²⁾

[2019년도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안 증액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	법관	법원사무직	별도정원	재판연구관	청원경찰
증원규모	323명	90명	154명	16명	50명	13명
예산안	15,960	7,560	3,476	1,057	3,599	268

자료: 대법원

그런데 법원사무직을 제외한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은 12개월분이 편성되어 있다.

2) 그 외에 2019년 공무원 봉급 인상분 1.8% 및 직급보조비 인상분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9년도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안 증액분 세부산출근거]

구분	세부산출내역
법관	90명×12월×7백만원
법원사무직	154명×6월×3.8백만원
별도정원	16명×12월×5.5백만원
재판연구관	50명×12월×6백만원
청원경찰	13명×12월×1.7백만원

자료: 대법원

그러나 실제 채용시기 및 교육기간을 고려할 때, 12개월분이 모두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18년 법관 임용시기를 살펴보면, 전담법관은 2월에 임용되었으며, 법관 채용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법조경력자 법관의 임용시기는 연말에 가까운 11월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판연구관 채용은 결원에 따라 연중 수시로 채용³⁾되고 있어 12개월분을 모두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예산안 내 인력 증원분으로 편성된 예산은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

2-2. 사법연수원 교수 봉급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연수원인건비는 사법연수원에 근무하는 법관 및 일반직 공무원, 사법연수생 등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 2019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억 9,500만원 감액된 123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다.

3) 2017년 재판연구관(전문임기제 및 일반임기제) 채용은 3, 6, 10, 12월 등에 걸쳐 연중 수시로 공고된 바 있다.

[2019년도 연수원인건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연수원인건비	15,680	15,244	15,244	12,349	△2,895	△19.0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사법연수원 교수에게 지급되는 봉급의 집행률이 저조하며,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의 규모도 줄어들고 있으므로 실제 교육프로그램 수요를 고려하여 교수 정원 및 관련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사법연수원 교수의 봉급으로 편성된 예산안은 29억 5,500만원으로 총 36명의 교수인원을 예상하여 산출하였다.

[연도별 사법연수원 교수 봉급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9.	2019
예산액	3,190(50명분)	3,174(42명분)	3,383(42명분)	2,955(36명분)
집행액	2,577	2,449	1,728	-
집행률	80.8%	77.2%	51.1%	-

자료: 대법원

그런데 최근 교수 봉급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집행 예측가능성이 높은 인건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는데, 이는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매년 교수 현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9월 현재 사법연수원 교수 현원은 31명으로 정원 대비 20명이 결원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18년 9월 현재 교수 봉급 예산의 집행률은 예산액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 사법연수원 교수 현황]

(단위: 명)

연도	정원	현원	결원	결원률
2013	64	54	10	15.6%
2014	64	44	20	31.3%
2015	65	42	23	35.4%
2016	50	39	11	22.0%
2017	51	37	14	27.5%
2018. 9.	51	31	20	39.2%

주 1. 2013~2017년은 연도말 기준

2. 교수 정·현원은 사법연수원장 및 부원장을 제외한 교수 수

자료: 대법원

이에 관해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교수는 연수생연수 이외에도 법관연수, 각종 연구기획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최근 교수 현원이 감소하여 교수 1인당 업무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교수인원 증원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법관 충원 부진⁴⁾에 따라 교수 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의 기능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검토를 통해 사법연수원 교수 정원을 실제 교육수요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2019년 편성된 36명분의 교수 봉급 예산도 실제 충원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2-3. 법원공무원교육원 신규 임용자 채용교육계획 국회 제출 필요

가. 현 황

교육원인건비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교육을 받는 신규 임용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 2019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4,700만원 증액된 54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다.

4) 사법연수원 교수의 임용자격은 「법원조직법」 제74조 및 「사법연수원 운영규칙」(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박사, 학사(통산 6년 이상의 경력) 또는 석사(통산 4년 이상의 경력) 학위취득자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현재 33명의 교수 중 법관이 아닌 교수는 1명으로 대부분의 교수는 법관으로 충원되고 있다.

[2019년도 교육원인건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교육원인건비	4,628	5,227	5,227	5,474	247	4.7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신규 임용자 봉급 예산의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할 뿐만 아니라, 2019년 증액 예산분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확한 신규 임용자 채용 및 교육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2019년 교육원인건비 사업 내 신규 임용자 봉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9,600만원(36%)이 증액된 15억원이다.

[연도별 신규 임용자 봉급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9월말 기준)
예산액	1,021	1,527	1,056	1,104
집행액	772	821	674	819
집행률	75.6	53.8	63.8	74.2

자료: 대법원

그런데 연도별 신규 임용자 봉급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예측가능성이 높은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집행률이 저조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집행률은 8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2018년의 경우 9월 현재 집행률은 74.2%이나, 집행소요가 큰 5급·9급 법원사무직 신규 임용자 보수 집행이 완료된 시기이므로 2018년 최종 집행률도 8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① 예산 편성시점에 교육연도 신규임용후보자 채용인원을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고, ② 최근 전자소송 관련사항 등 교육내용이 증가하여 교육기간을 연장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대로 교육기간이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동 항목의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력운영계획과 신규 임용자 교육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연도별 불용사유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예산 자체가 절대적으로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의 경우, 실제 교육 인원이 계획 인원보다 크게 미달한 직렬은 속기직(40명 미달)과 사서·전산·통계직(14명 미달)인데, 이들 직렬의 교육기간은 4~5일 수준에 불과하여, 2015년에 발생한 2억 5,000만원 불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2016년에도 속기직이 61명 미달하고, 일부 다른 직렬에서 소수 미달된 바 있으나 2016년에 발생한 7억원 수준의 불용액을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2017년은 신규 임용자 계획인원과 실제 채용인원에 큰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집행부진이 발생하였는데, 2017년 법원사무직 9급 임용자는 계획인원 대비 99명이 미달됨에 따라 관련 예산 약 3억원이 불용되었다.

[연도별 신규 임용자 과정 교육실적]

(단위: 명)

교육 과정	2015년			2016년			2017년			
	교육 기간	계획 인원	실제 인원	교육 기간	계획 인원	실제 인원	교육 기간	계획 인원	실제 인원	
기본 교육	법원사무직 5급	17주	10	10	16주	10	9	17주	10	11
	법원사무직 9급	7주	400	397	7주	400	408	8주	400	301
특별 교육	가사조사관	4주	20	16	4주	20	23	6주	10	11
	관리직	3일	30	24	3일	30	31	4일	20	30
	속기직	4일	80	40	5일	80	19	5일	30	10
	사서직				7주	10	8	7주	10	2
	전산, 통계직	5일	20	6	5일	10	2	5일	10	10
	보안관리대	5일	50	69	5일	50	57	5일	50	57

자료: 대법원

이와 같은 인력운영계획 및 신규 임용자 교육계획 미흡은 2019년 예산안 산출 근거에도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신규 임용자 봉급 예산안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5급 임용자 16명분으로 1억 7,100만원, 9급 신규 임용자 411명분으로 13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각 직렬에 따라 교육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직렬별 세부내역이 없이 개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2019년도 신규 임용자 봉급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채용예정인원	봉급단가	교육기간	예산안
5급 신규 임용자	16명	2,678,268원	4개월	171
9급 신규 임용자	411명	1,077,916원	3개월	1,329

자료: 대법원

이는 2019년도 인력운용계획과 신규 임용자 교육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대법원이 2019년 신규 임용자 보수로 증액 편성한 3억 9,6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2019년도 인력운영계획과 신규 임용자 교육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국회 심의기간 내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시설관리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마련 필요

가. 현황

본부운영지원 사업¹⁾은 각급 법원 공공요금, 청사관리 비용 등 경상 경비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5억 7,000만원 증액된 789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본부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본부운영지원	62,669	68,396	68,396	78,966	10,570	15.5
청소시설관리 등	38,288	39,720	39,720	42,943	3,223	8.1
청소 무기계약직	0	15,192	15,192	14,059	△1,133	△7.5
청소·시설관리 등 위탁사업비	38,185	24,425	24,425	28,781	4,356	17.8
청사관리 노임(일용임금)	103	103	103	103	0	0.0

주: 본부운영지원사업 예산증가는 청소시설관리 위탁사업비 증가(약 32억원), 신증축법원 비품구입 및 이전비 증가(약 47억원), 내역사업 이관(약 28억원) 등에 기인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본부 및 도서관의 청소 및 시설관리 근로자 보수를 위해 2019년 예산안으로 총 42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위한 예산 140억 5,900만원과 위탁사업비 287억 8,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업비가 구분되는 것은 대법원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청소 및 시설관리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7031-303

나. 분석의견

첫째, 대법원의 당초 계획과 달리 시설관리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7년 7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대법원은 2018년 청소근로자와 시설관리 근로자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용임금 및 관련 경비 15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소근로자 639명 중 326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시설관리 근로자의 경우 업무의 성질, 자격증 소지 여부, 근무형태가 상이하여 표준임금체계를 설정하기 어려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편성된 상용임금 등 관련 경비 66억 4,000만원은 다시 관리용역비로 조정되어 집행되고 있다.

[2018년 청소 및 시설관리 근로자 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내역		예산비목	예산액	조정액	예산현액
무기 계약직	청소·시설관리 근로자 보수	상용임금(110-03목)	12,486	△5,560	6,926
	청소용품구입	일반수용비(210-01목)	126	0	126
	맞춤형복지	복리후생비(210-09목)	193	0	193
	법정부담금	고용부담금(320-09목)	2,387	△1,080	1,307
	소계			15,192	△6,640
외부용역	청소 위탁사업비	관리용역비(210-15목)	9,297	0	9,297
	시설관리 등 위탁사업비	관리용역비(210-15목)	15,128	6,640	21,768

자료: 대법원

한편, 대법원의 2019년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살펴보면, 청소근로자 177명에 대한 전환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뿐, 시설관리직 전환계획은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시설관리 근로자에 관한 사업비는 전액 관리용역비(245억 1,400만원)로 편성되어 있다.

[2019년 청소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무기계약직	326명	177명(신규 29명) 전환, 총 503명	147명 전환, 총 650명
외부용역	313명	147명	-
합 계	639명	650명	650명

자료: 대법원

[2019년 청소 및 시설관리 등 근로자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내역		예산비목	예산안
무기계약직	청소 및 시설관리 근로자 보수	상용임금(110-03목)	11,383
	청소용품구입	일반수용비(210-01목)	260
	청소피복비	피복비(210-03목)	89
	맞춤형복지	복리후생비(210-09목)	195
	법정부담금	고용부담금(320-09목)	2,132
	소계		
외부용역	청소 위탁사업비	관리용역비(210-15목)	4,267
	시설관리 등 위탁사업비	관리용역비(210-15목)	24,514

자료: 대법원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부 등은 시설관리직 일부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시설관리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2019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타 기관의 무기계약직 전환방안을 참고하여, 향후 시설관리직 전환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부운영지원 사업에 편성된 법원도서관 청소·시설관리 근로자 관련 예산은 법원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본부운영지원 사업 내에 편성한 청소·시설관리 근로자 관련 예산 429억 4,300만원에는 법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청소·시설관리 근로자에 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도서관이 대법원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용역계약을 함께 체결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① 2018년 8월 법원도서관은 사법연수원(경기 고양시) 부지로 이전했으며, ②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 등은 각 기관의 운영지원 사업에 청소·시설관리 근로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법원도서관도 별도의 운영지원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법원도서관 청소·시설관리 근로자 관련 예산을 이관할 필요가 있다.

2) 행정안전부는 2017년 말 시설, 통신, 승강기 관리직 48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국회는 승강기 및 조경 관리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

가. 현황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외국어발급시스템 구축 사업은 현재 국문으로만 발급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외국어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사업¹⁾의 신규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7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외국어발급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가족등록업무전산화	18,222	18,491	18,491	19,141	650	3.5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어 발급 시스템 구축	0	0	0	745	745	순증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외국어발급시스템 구축 사업은 현재 구체적인 구축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족관계 증명서류는 국문으로만 발급됨에 따라 국민들이 직접 번역·공증을 거쳐 외국어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 사업은 국민편의 제고 차원에서 사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10월 현재, 시스템 구축 세부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332-303

대법원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외국어발급시스템 구축시스템의 사업범위를 3종의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영문 증명서류의 구체적인 구현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아래의 사항에 관해 조속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가족관계 증명서류에 기재된 사항과 해외에서 필요한 가족관계 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령,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²⁾ 및 본(本)은 해외에서 요구하는 본인증명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구현할 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해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보다 여권번호가 통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검토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영문 성명은 여권정보와 연계하여 처리되어야 하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국민의 영문 성명에 관한 보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2018년 10월부터 관련 제도 검토 및 외교부 여권시스템 연계방안 협의를 수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12월에 마련할 예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외국어발급사업 추진일정안]

추진 시기	추진 내용
2018. 10.	영문증명서 발급 관련 제도 검토
	여권영문명·여권번호 등 외교부 여권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협의
2018. 12.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
2019. 4.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 의뢰 및 사업자 선정
2019. 1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서비스 제공('19. 11.)

자료: 대법원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12월은 국회 예산심의기간을 도과한 시기이므로, 2019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및 예산규모에 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기 어렵다.

2)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 그 등록부를 특정하기 위한 주소로서, 개인을 식별하는 기준 중 하나이다. 舊)호적법 상 본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외국어발급시스템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 심의기간 내에 제출하여 예산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있는 외국어를 선정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등기소 등기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구축 사업¹⁾은 현재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한 등기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등기업무전산화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5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등기소 등기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등기업무전산화	47,865	46,394	46,394	47,056	662	1.4
등기소 등기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구축	0	0	0	554	554	순증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카드결제 수수료 절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전국 180개 등기소에서 등기사항 증명서류 발급수수료 결제 시 신용카드가 활용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은 2019년 상반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연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카드결제로 인해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 등기특별회계 1334-305의 내역사업

대법원은 카드수수료율을 약 2.06%, 카드결제 사용률을 100%로 볼 때, 약 10억 5,600만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카드수수료 발생에 따른 등기특별회계 재정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공여방식²⁾ 등 수수료 절감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등기소방문 등기수수료 카드결제 시 재정부담 예상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등기소 등기수수료	카드결제 수수료(수수료율 2.06% 적용)			
		100%카드결제	75% 카드결제	50% 카드결제	30% 카드결제
등기신청	18,535	382	286	191	115
열람발급	32,730	674	506	337	202
합계	51,265	1,056	792	528	317

주: 2017년 등기소 등기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방문하여 결제한 등기수수료
자료: 대법원

한편, 대법원은 카드결제서비스를 위해 각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카드수수료율 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2012년 지방자치단체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서비스 구축 사업 시 행정안전부가 10개 신용카드사와 소액결제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카드사에게 일정기간 자금운용기간을 주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카드수수료를 대체하는 방식

가. 현황

여유자금운용 사업¹⁾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을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금운용 사업으로, 2019년도 계획안은 217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여유자금운용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본예산	수정(A)		B-A	(B-A)/A
여유자금운용	10,122	9,939	9,939	21,729	11,790	118.6

자료: 대법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공탁금 운용수익금²⁾을 재원으로 하며, 2016년 설치되었다. 동 기금의 주요사업은 공탁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용 사업을 비롯한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주요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2019년 계획안
공탁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용	공탁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등 정보화 사업	3,031
소송구조 지원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민사소송비용 지원	6,249
조정제도 지원	조정위원 수당, 조정센터 운영 등 조정제도 운영 지원	9,915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등 민간경상보조	3,262
사법서비스 향상	가사비송, 소년보호재판, 사회적약자 창구 등 운영 지원	30,267
계		52,724

자료: 대법원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 1)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9701-970
- 2) 공탁금은 「공탁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탁금 보관은행에서 보관하게 되며, 공탁금 보관은행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고, 대법원은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출연금을 공탁금관리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9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여유자금운용 계획안은 217억 2,900만원으로 2018년 계획액 99억 3,900만원 대비 약 118.6%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기금 규모의 29.1%로서 2018년 17.0%보다 12.1%p 상승한 것이다.

[연도별 여유자금운용 사업 계획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2016	2017	2018	2019
기금규모 계획액(A)	51,590	50,500	58,336	74,567
여유자금 계획액(B)	2,083	5,934	9,939	21,729
여유자금 집행액(C)	5,563	10,122	-	-
여유자금 비중(A/B)	4.0	11.8	17.0	29.1
집행률(B/C)	267.1	170.6	-	-

자료: 대법원

연도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 약 21억원에서 2019년 약 217억원 수준으로 3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기금규모에서 여유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0%에서 2019년 29.1%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결산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과 2017년의 집행률은 각각 267.1%, 170.6%로서 여유자금 계획액은 과소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여유자금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인 공탁출연금의 수입이 늘어나는 반면, 주요사업비 증가분은 기금 규모 증가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사업비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기금 규모에서 주요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95.8%에서 2019년 70.7%로 25.1%p 하락하였다. 2019년 주요사업비는 527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2,100만원(9.2%) 증액되었으나, 전체 기금규모의 증가분 162억 3,100만원(27.8%)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

[연도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주요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2016		2017		2018		2019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기금 규모	51,590	100.0	50,500	100.0	58,336	100.0	74,567	100.0
여유자금 계획액	2,083	4.0	5,934	11.8	9,939	17.0	21,729	29.1
주요사업비 계획액	49,407	95.8	44,466	88.0	48,303	82.8	52,724	70.7
기금운영비	100	0.2	100	0.2	94	0.2	114	0.2

자료: 대법원

그러나 이와 같이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된 사업성 기금 내 여유자금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유휴 재원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전반적인 국가 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 여유자금 전액은 한국은행에 예치됨에 따라 별도의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유자금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

1 현황

헌법재판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헌법재판소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2,6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2억 2,100만원(△97.9%) 감소하였다.

[2019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2	1,247	1,247	26	△1,221	△97.9

주: 총계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479억 6,2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5억 1,700만원(5.5%) 증가하였다.

[2019년도 헌법재판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0,755	45,445	45,445	47,962	2,517	5.5

주: 총계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2019년도 헌법재판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헌법재판 사건 수 증가에 따라 국선대리인보수를 증액하였고, ② 청사 증축에 따른 도서관 이전비용 및 증축 청사 내부 구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2019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증축청사 공정관리를 통해 연내 청사 준공을 마무리하는 한편, 상설전시관 설치 등 청사증축 관련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헌법재판소의 2019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2019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증축청사 내부구성 등이 있다.

본부운영지원 사업은 증축청사 완공에 따라 도서관 이전 비용 및 증축청사의 내부 구성을 위한 비용이 반영되어 증액되었다.

[헌법재판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2018 ¹⁾		2019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본부운영지원	2,002	2,002	4,980	2,978	148.8

주: 1) 주요 증액사업은 2018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헌법재판소

II

개별 사업 분석

1

헌법재판소 증축청사 공정관리 강화 필요

가. 현황

헌법재판소 청사시설 취득 사업¹⁾은 헌법재판소 사무공간 확대를 위해 부지 내 신규 청사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종료사업으로, 2019년 계획안은 83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헌법재판소 청사시설 취득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헌법재판소 청사시설 취득	1,023	8,000	8,000	8,335	335	4.2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신축청사 준공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상설전시관 설치 등 청사증축과 관련된 5개 사업을 본부운영지원 사업²⁾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였다. 본부운영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9억 7,800만원 증액된 49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사증축 관련 사업의 2019년 예산안은 24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 국유재산관리기금 1431-310

2) 코드: 일반회계 1032-302

[2019년도 청사증축 관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본부운영지원	1,548	2,002	2,002	4,980	2,978	148.8
헌법재판소 상설전시관 설치	0	0	0	602	602	순증
증축청사 도서관 이전 등 추진	0	0	0	1,318	1,318	순증
증축청사 시설 등 공사비	0	0	0	264	264	순증
증축청사 집기류 구입	0	0	0	160	160	순증
기록물보존서고 확충	0	0	0	117	117	순증
계	0	0	0	2,461	2,461	순증

자료: 헌법재판소

나. 분석의견

헌법재판소 청사증축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므로, 증축청사 관련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 증축청사 사업은 도서관 및 사무실 등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국유재산관리기금에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으며, 2019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84억 4,500만원이며, 증축청사 규모는 지상 2층, 지하 3층으로 연면적 7,800㎡이다.

[헌법재판소 청사증축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5~2019년
총사업비	184억 4,500만원
청사규모	연면적 7,800㎡(지상2층, 지하3층)
청사위치	헌법재판소 부지 내
추진경과	2013. 12. 청사 내 여유부지를 활용하여 청사증축결정(재판관회의) 2015. 3.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2015. 10. 기본설계 착수 2015. 11. 문화재 시굴조사 시행 2016. 7. 문화재 정밀발굴조사(1차) 2017. 12. 공사 착공, 문화재 정밀조사 완료(2차) 2019. 12. 청사 준공 예정

자료: 헌법재판소

그러나 헌법재판소 청사시설 취득 사업은 설계유찰, 문화재 시굴 및 정밀조사 전환, 문화재 발굴에 따른 유구보존 심의 등의 사유로 매년 사업비가 이월됨에 따라 착공시기는 당초 2016년 상반기에서 2017년 12월로, 준공시기는 2018년에서 2019년 12월로 변경되었다. 한편, 2018년 사업비로 8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지열공사 등 일부 공정이 연장됨에 따라 2018년 예상이월액은 약 41억원 수준이다.

[헌법재판소 청사시설 취득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계획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부진 사유
2015	704	201	503	0	설계공모 유찰로 설계비 이월
2016	4,424	515	302	3,607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로 설계 및 공사 계약 지연
2017	1,394	1,023	371	0	총사업비 조정 및 유적시설 대책 마련으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이월(12월 착공)
2018. 7.	8,371	124	-	-	-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현재 계획과 같이 2019년 12월에 청사시설이 준공될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상설전시관 설치, 도서관 이전 등 후속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증축청사에 설치될 헌법재판소 상설전시관 사업이나 증축시설 공사는 전시기획 및 콘텐츠 제작·설치, 내부시설 설계·시공 등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2019년도 헌법재판소 증축청사 관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안
헌법재판소 상설전시관 설치	전시기획 및 디자인설계, 전시실 구성·시공 등	602
증축청사 도서관 이전 등 추진	도서관 이전비 및 서가, 전자도서관 장비 구입 등	1,318
증축청사 시설 등 공사비	스피드게이트, 다목적실 음향설비 설치 등	264
증축청사 집기류 구입	사무집기류 구입	160
기록물 보존서고 확충	모바일 구입 등	117
계		2,461

자료: 헌법재판소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신축청사 공정관리를 통해 연내 청사 준공을 마무리하는 한편, 청사증축 관련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집 필

총괄 | 이승재 예산분석실장

심의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정승환 예산분석총괄과장
박혜진 산업예산분석과장
이동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신은호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신봉진 예산분석관
황수환 예산분석관
정주완 예산분석관
이영미 예산분석관
오덕근 예산분석관
이병철 예산분석관

지원 | 이정아 행정실무원
박미현 행정실무원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8년 10월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일칼라콤(주)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123-3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8